

---

- 2021년 사천시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 〈 목 차 〉

1. 승진임용 인사관리 부당처리 .....	1
2.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	8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미이행 .....	18
4.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4
5. 임업용산지 내 산지전용 협의 소홀 .....	28
6. 농지 전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 부적정 .....	32
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적정 .....	35
8. 축산물 위생업소 등 위생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	39
9.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등 부적정 .....	44
10.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	49
11. ○○○선별장 근로자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	62
12. ○○○○ 사면 점검로 및 주변사면 응급복구공사 계약추진 부적정 .....	67
13. 2019년 ○○○ 및 ○○○ ○○○○ 안전점검용역 계약추진 부적정 .....	74
14. ○○○○ 공급확대 지원사업 사업처리 지연 및 정산검사 부적정 .....	81
15.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87
16. 포상금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	95
17. ○○○ ○○○ 및 사천시장배 ○○○○대회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105
18.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	112
19. ○○○○○○ ○○○○○○ 운영비 교부 및 정산 부적정 .....	121
20.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정 누락 .....	131
21.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	136
22. ○○○구항 ○○○○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분할발주 업무 등 소홀 .....	140
23. ○○○○○○○○○ 명품거리 조성사업 공사감독 부적정 .....	150
24. ○○○ ○○○ ○○○○○○사업 추진 부적정 .....	154
25.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164
26. ○○중점관리지역 ○○○○사업 공법선정 등 추진 소홀 .....	171
27. ○○ ○○○정비사업 하도급관리계획 등 관리 부적정 .....	181
28. ○○ ○○○정비사업 시행계획수립 등 추진 부적정 .....	191
29. 건축허가 등 법령검토 부적정 .....	199
3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의 부적정 .....	209
31. ○○○ ○○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	21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인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로연수 및 명예 퇴직 결원 수만큼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정기인사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정기인사 시 4급 이하 결원 발생이 확정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하는 등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당해 직급에

결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위 직급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8. 12. 10.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 (안)(○○과-12○○○호)”에 대해 시장 방침을 받으면서 당시 지방○○5급 ○○○의 경우 2018. 10. 17. 음주운전 혐의로 ‘정직1월’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로연수 파견 대상자<sup>1)</sup>에 포함되지 않았고 딱히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대상자로 확정되지도 않아 결원으로 산정될 수 없음에도 결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 2018. 12. 14. 인사위원회에서는 5급으로의 승진대상자 1명을 추가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 ○○과에서는 5급 승진대상자는 5급 승진리더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승진임용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른 직급과 달리 결원 발생일 보다 6개월 앞당겨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곤 하였는데 ○○○의 경우 당시 공로연수는 물론 의원면직 대상자로도 확정되지 않아 결원으로 산정할 수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어 명예퇴직<sup>2)</sup>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부득이 정년퇴직일(2019.12.31.) 6개월 전인 2019. 6월 정기인사 계획 시 결원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사천시 ○○과에서는 ○○○의 의원면직 신청서가 2019. 6월로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본인은 2018. 12.경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의결 대상자를 추가 확정할 바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019. 6. 정기인사 시 승진임용 심의를 하였다면 승진임용 의결대상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

1)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됨(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사천시 ○○과에서는 2019. 5. 10. ○○○의 의원면직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9. 5. 28.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 조회 의뢰하였으며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한 후 같은 해 6. 17. 시장의 방침을 받고 의원면직 인사발령(발령일자 : 2019. 6. 30.) 하였다.

### 3.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제2호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희롱 등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6개월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자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2019. 1. 28. ○○○ 혐의로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지방○○○ ○○○의 경우 징계처분일로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21개월이 경과된 2020. 10. 28. 이후에야 승진후보자명부 등재가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한 후 2020. 6. 15.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과-14○○○호)” 붙임자료로 첨부하여 시장의 방침을 받는 등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임용 인사운영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1.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사천시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당시 ○○○장 지방○○5급 ○○○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서를 2018. 12.초에 받았으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신청서를 바로 접수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난 2019. 5. 10. 접수하여 같은 해 6. 30.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2018. 12. 14.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는 ○○○가 의원면직 처리 된 후인 2019. 7. 1.자로 승진임용되어 정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며, 잘못이 있다면 실무담당자의 착오로 사직서 접수를 지연한 사실 뿐이라고 의견 제시하였다.

(의원면직 신청과 확정) 의원면직 신청이 접수되면 인사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조회 요청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임용권자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이러한 조회 절차와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원면직 신청이 접수되어 확정되는 데에는 대략 15 ~ 20여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면직 신청자는 본인이 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한달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곤 하였는데, 특히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두고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자격이 안되어 부득이 의원면직 신청을 하는 자는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한두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 과정과 임용권자의 최종 결재를 득한 후 비로소 의원면직 처리가 가능하였다.

만약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두고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자격이 안되어 부득이 의원면직 신청을 한 자가 퇴직 제한여부 조회결과 행정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의4 각 호의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의원면직 처리도 불가능하여 결국 정년퇴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 경우처럼 의원면직 신청만 하였다고 하여 신청자가 면직하고자 하는 날에 의원면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결과적으로는 ○○○의 경우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없어 2019. 6. 30.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지만)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임용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인 바, 의원면직 확정도 되지 않은 자를 6개월 뒤에 확정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결원으로 산정하여 5급 승진대상자를 1명 더 결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무담당자가 잘못이 있다면 접수를 지연시킨 것뿐이라는 사천시 ○○○과의 의견 제시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5급 승진대상자 결정 적정성)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 의원면직 신청을 접수하여 확정된 후인 2019. 6. 결원으로 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2018. 12. 승진심사 시 ○○○를 결원으로 산정하고 추가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는 부당하게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것이고 2019. 6.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심사 시에는 승진대상자가 달라졌을 수도 충분히 있어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할 것이다.

##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에 대하여

사천시 ○○○에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지방○○○7급 ○○○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사실은 인정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의견 제시하였지만 당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과-14○○○호)” 시장 방침문의 붙임자료로 첨부하였고 당시 ○○○은 ○○○ 직렬 순위 1번(승진후보자 명부에 ○○○ 직렬은 ○○○ 1명 뿐이었음)으로 당해 직렬이 승진대상 직렬로 선정이 되었다면 인사위 심의를 거쳐 최종 승진임용 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인사위에 안건 상정여부를 떠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3. 감독책임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건에 있어 행위당시 ○○담당 ○○○(○급 현 ○○○장)와 ○○장 ○○○(○급 현 ○○○장)는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로서 2018. 12. 10. 실무담당자 ○○○(행정○급 현 ○○○)이 기안 상신한 “2018년 하반기 명예퇴직·공로연수 등 결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 및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안)“ 검토 결재 과정에서 의원면직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에 대해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막연히 검토 결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한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 건에 있어서도 행위당시 ○○담당 ○○○(○급 현 ○○○)과 ○○장 ○○○(○급 현 ○○○장)는 당시 실무담당자 ○○○(○급 현 ○○○과)가 기안 상신한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직급별 승진대상 직렬 선정(안)(○○과-14○○○호)” 첨부자료(승진후보자명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가 포함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검토 결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 4. 소결론

결론적으로 사천시 ○○○에서는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관련자들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당시 실무담당자 ○○○(○급 현 ○○○), 실무책임자 ○○○(○급 현 ○○○장), 감독책임자 ○○○(○급, 현 ○○○장)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요구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당시 실무담당자 ○○○(○급 현 ○○○

과), 실무책임자 ○○○(○급 현 ○○○), 감독책임자○○○(○급 현 ○○○)에 대해서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요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천시 ○○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요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2018년 12월, 승진예정인원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면), 실무책임자 지방○○○○ ○○○(현 ○○○장), 감독책임자 지방○○○ ○○○(현 ○○○장)와 2020년 6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지방○○○○ ○○○(현 ○○○), 감독책임자 지방○○○○○ ○○○(현○○○)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7조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 미만으로 정하되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sup>1)</sup>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7-0642, 2018. 1. 29.)에 의하면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일부개정이 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을 받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던 바, 그 입법취지는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개별면적을 합산함으로써 국토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해야 하나,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각 개발행위의 목적, 연접한 필지의 개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방법 : 국토계획법 해설(2018, ○○○)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토지 소유(동일인)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가. 동일인이 지번이 다른 필지(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는 필지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 나.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 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건축을 하는 경우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여러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인 경우 또는 공작물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

1)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다.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산정

라.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준공된 필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에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다만, 기존의 공장 부지를 증설하는 경우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하여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마. 여러필지에 개발행위허가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에 10,000㎡ 규모를 초과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동일인 토지소유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① ○○○이 2017. 8. 4.과 같은 해 8. 7.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신청한 ○○면 ○○리 ○○○ 외 2필지(9,555㎡)에 대하여 같은 해 12. 19.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 처리하였고, ② 2018. 5. 29. ○○○가 동일한 목적으로 신청한 ○○면 ○○리 ○○○ 외 2필지(2,338㎡)에 대하여 서로 연접한 필지(① 9,555㎡와 ② 2,338㎡)를 합산한 개발면적은 11,893㎡로서 개발행위허가 규모(10,000㎡)를 초과하였는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같은 해 7. 9.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③ 2019. 4. 24. ○○○가 신청한 ○○면 ○○리 ○○○ 외 6필지(9,907㎡) ④ 2020. 8. 31. ○○○이 신청한 ○○면 ○○리 ○○○ 외 2필지(2,351㎡)에 대하여 서로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면 개발면적은 개발행위허가 규모(10,000㎡)를 초과한 21,800㎡<sup>2)</sup>와

24,151m<sup>3</sup>)에 각각 달하는데도 위와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9. 7. 20.과 2020. 10. 28. 각각의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로 처리하였다.

[표 1] 연접한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구분	신청자	위 치	용도 지역	지목	부지면적 (m <sup>2</sup> )	목 적	허가일	준공(예정)일
계		4개소			24,151			
①	○○○ (2017.08.04. 2017.08.07.)	○○면 ○○리 000, 000, 000-0	자연 녹지 지역	임	9,555	주택	2017.12.19.	2019.01.30
②	○○○ (2018.05.29.)	○○면 ○○리 000, 000-0, 000-0	자연 녹지 지역	전	2,338	주택, 제2종근린 생활시설	2018.07.09.	2021.06.30
③	○○○ (2019.04.24.)	○○면 ○○리 000, 000, 000, 000-0, 000-00, 000-00, 000	자연 녹지 지역	임	9,907	주택, 제2종근린 생활시설	2019.07.20.	2021.12.30.
④	○○○ (2020.08.31.)	○○면 ○○리 000, 000-00, 000-0	자연 녹지 지역	전임	2,351	주택	2020.10.28.	2022.10.31.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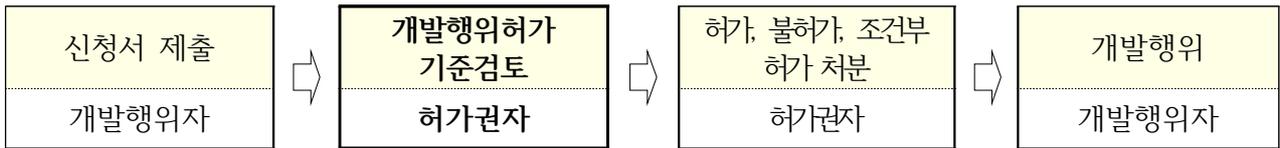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21. 5. 10. ~ 5. 24.) 중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허가권자로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표 2]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자연녹지지역 10,000m<sup>2</sup> 미만)에 적합한 지 여부와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2) ① 9,555m<sup>2</sup> + ② 2,338m<sup>2</sup> + ③ 9,907m<sup>2</sup>

3) ① 9,555m<sup>2</sup> + ② 2,338m<sup>2</sup> + ③ 9,907m<sup>2</sup> + ④ 2,351m<sup>2</sup>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불허가 처분을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현지확인(출장복명 등), 허가기준 검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는 위법·부당한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표 2] 개발행위허가 절차



[출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재구성」]

그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 이후, [표 3]과 같이 2018. 10. 23.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현황

구분	위 치	토지소유자	피허가자 명의 변경			(주)FA와 연관성
			일자	당초	변경	
계	4개소					
①	○○면 ○○리 000, 000 000-0	○○○씨문중 ○○○ 외 5 ○○○	2018.10.23.	○○○	(주) ○○○	· 피허가자 : (주)○○○
②	○○면 ○○리 000, 000-0, 000-0	○○○ ○○○	2020.12.08.	○○○	(주) ○○○	· 토지소유자 : ○○○ → (주)○○○의 대표이사 · 피허가자 : (주)○○○
③	○○면 ○○리 000, 000, 000, 000-0, 000-00, 000-00, 000	○○○ ○○○ (주)○○○ ○○○	2020.11.19.	○○○	(주) ○○○ 제3자	· 토지소유자 : ○○○, ○○○ → (주)○○○의 대표이사, 감사 · 피허가자 : (주)○○○
④	○○면 ○○리 000, 000-00, 000-0	○○○ (주)○○○ ○○○	2021.03.11.	○○○	○○○ ○○○ 제3자	· 토지소유자 : (주)○○○ , ○○○ → (주)○○○ 직접 소유, 대표이사 · 피허가자 : ○○○, ○○○, ○○○
법인등기부등본		· 상 호 : (주)○○○ · 본 점 : 사천시 ○○○면 000길 00 · 대표이사 : ○○○(2018. 3. 6. 등기), 감사 : ○○○(2018. 3. 6. 등기)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사업자 측에서는 [표 4]와 같이 주차장, 공원녹지, 하수도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비(추정액 : 225백만원<sup>4)</sup>)를 비롯하여 심의절차에 따른 소요기간<sup>5)</sup> 등 경제적·

4) [주차장(242㎡) + 공원녹지(1,207㎡)] × 조성원가(155,180원/㎡), 공공하수처리장 인입 비용 제외

시간적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는 반면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규제가 이루어지 않아 주차장, 공원녹지, 하수도 등 주거환경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미비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시킴은 물론 장래에는 공공부담 비용으로 충당(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개발행위허가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비교표

구 분	개발행위허가(준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증 감		비 고
	면적(m <sup>2</sup> )	비율(%)	면적(m <sup>2</sup> )	비율(%)	면적(m <sup>2</sup> )	비율(%)	
주 차 장	0	0%	242	1%이상	△242	△1%	「주차장법」 제12조의3
공원녹지	0	0%	1,207	5%이상	△1,207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도 로	3,732	15.45%	1,691 ~ 3,623	7~15%	109	0.45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5] 가로망계획수립 지침
상.하수도	· 지방상수도 인입 ·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		· 지방상수도 인입 · 공공하수처리장 인입 유도		· 공공하수처리장 인입 유도		「수도법」 제17조 「하수도법」 제11조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업무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고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표 5]와 같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3,000m<sup>2</sup> 또는 연간 5,000m<sup>2</sup>, 토지 면적은 5,000m<sup>2</sup> 또는 연간 10,000m<sup>2</sup> 이상의 부동산개발<sup>6)</sup>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요건<sup>7)</sup>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5)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 7건(원안 1, 조건부 6), 인허가 소요기간 : 6개월 ~ 1년 5개월

6) 「부동산개발업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함.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표 5]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종 류	건축물 연면적	토지 면적	비고
규 모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	

그리고 [표 6]과 같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2018. 3.)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등을 하거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허가 면적기준으로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인·허가 신청자가 “공급의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에는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 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공급의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부동산

7)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 가.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주식회사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출자금 3억원일 것
- 나. 사무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개발업법」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무등록 사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6]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과정

구 분	인허가 단계	사후관리	비고
타인 공급목적의 부동산개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제출 (개발업 등록증 사본 제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개발행위 인허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 margin: 0 auto;">부동산개발 허용</div>	
본인 직접사용의 부동산개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비등록 대상 확인서 제출 (일체의 공급제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개발행위 인허가</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시·도지사 통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width: 80%; margin: 0 auto;">인허가 명의 양도 또는 타인 공급행위</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width: 80%; margin: 0 auto;">시·도지사 통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width: 80%; margin: 0 auto;">수사기관 고발</div>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등에 따라 법인, 개인 등이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연면적 3,000㎡(또는 연간 5,000㎡), 토지면적 5,000㎡(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인허가 명의변경이나 타인에게 일체의 공급행위(판매 또는 임대)가 제한됨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고, 인허가와 동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법 제36조를 위반한다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8. 6. 29. ○○○가 소매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천시 ○○면 ○○리 ○○○-○ 외 3필지(6,482㎡)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제협의)를 하면서 토지면적 5,000㎡ 이상으로 부동산개발 등록대상임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2018. 8. 7.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를 처리하였고, 2021. 5. 24. 감사일 현재 까지도 도지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21. 5. 10. ~ 5. 24.)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표 7]과 같이 위 ○○○의 경우 2018. 9. 21. 준공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 12. 28.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 사업자)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건물을 신축(1동 2층, 연면적 1,416㎡)하여 의류매장을 운영 중이고, 나대지에는 다수의 천막을 설치하여 야외 잡화매장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개발행위허가 현황

신청인 (신청일)	위 치	용도 지역	지목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	허가 목적	허가일 (준공일)	타인 공급행위(매매)	
							일자	매수자
○○○ (2018.06.29.)	○○면 ○○리 000-0, 000-0, 000-0, 000-0	계획 관리지역	답	6,482 (54)	소매점	2018. 8. 7. (2018. 9. 21.)	2018.12.28.	(주)○○
(The remaining content of the table is obscured by a large X mark in the original image.)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방지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무등록으로 인한 개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에 따른 벌칙조항(형사 처벌)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신청자가 명의를 달리하였고 준공된 기 허가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각각의 개발행위허가(의제협의)로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임에도 단일시설물(소매점)로 계획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급의 목적(직접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등록사실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부적정,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업무 소홀히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과), ○○과 지방○○○○○ ○○○(현 ○○과), ○○과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훈계)

② 앞으로 연접한 여러 필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 등록대상임에도 확인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미이행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과, ○○○○과, ○○○○○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 함)」 제10조2에 따라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단계에서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증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2에 따르면 2015. 7. 29.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별첨]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라 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인증 신청은 [표 1], [표 2]와 같이 개별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준공단계에서 본인증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모범적 역할을 기대하고자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폭 넓게 정하고 있다.

[표 1] BF 인증 절차

구 분	실시설계 신청 시	준공단계	비고
본 인증부터 신청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인증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인증심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인증수여</div> </div>	
예비인증부터 신청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예비인증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예비인증심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예비인증수여</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본 인증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인증심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인증수여</div> </div>	

[표 2] BF 인증 절차

구 분	기관명	기관의 역할	비고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BF 인증제도 운영 총괄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li> <li>•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i> <li>•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li> <li>•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 주무기관에 반기별 보고</li> </ul>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BF인증 대상시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의무대상인 경우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 준공단계에서는 본인증을 받는 등 BF인증 의무이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 등에서는 [표 3]과 같이 2017. 10. 1.부터 감사일 현재 (2021. 5. 24.)까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축시설 34건 중 실제 본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27건(79%)이었고, 본인증을 미획득한 시설은 7건(21%)에 달하였다.

[표 3] BF 인증 의무시설 본인증 획득 현황

합 계		본인증 획득(예정)		본인증 미획득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4건	100%	27건	79%	7건	21%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본인증을 미획득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1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과, 경상남도 ○○○○과, 사천시 ○○○○과 등 담당기관 및 담당부서로부터 BF 인증제도 운영 안내 및 준수 협조공문을 통보 받은 바 있고, 건축허가 당시 ○○○○과에서 BF인증 대상시설이라는 관계부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BF인증에 필요한 소요기간(3개월 이상)과 설계비, 인증수수료, 시설개선비 등 예산부족을 이유로 BF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공공건축물이 사후 본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표 4]와 같이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투입 및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 되고, 일부는 전면적인 건축물 개축 등으로 본인증 미획득 시설로 남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들은 계속적인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BF 인증 의무시설 미획득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m<sup>2</sup>)

사업명	위 치	사업비	사업기간	인증의무시설		미인증 사유	시설개선 예산액	담당부서
				종 류	건축면적			
합 계	7개소	1,550			510.29		280	
○○관광지내 화장실공사	○○동 0000-0	320	2017.07.10 ~ 2017.11.22.	공중화장실 (남·여)	74.07	소요기간 예산부족	구조적인 개선불가	○○ ○○과
○○경로당 신축공사	○○동 000-0	150	2017.03.13 ~ 2017.12.11.	노유자시설 (경로당)	84.9	소요기간 예산부족	60	○○ ○○과

사업명	위 치	사업비	사업기간	인증의무시설		미인증 사유	시설개선 예산액	담당부서
				종 류	건축면적			
○○경로당 신축공사	○○읍 ○○리 000	240	2019.03.22. ~ 2019.12.04.	노유자시설 (경로당)	115.87	소요기간 예산부족	80	○○ ○○과
○○경로당 신축공사	○○면 ○○리 000-0	250	2019.02.27. ~ 2021.03.15.	노유자시설 (경로당)	76.56	소요기간 예산부족	60	○○ ○○과
○○경로당 신축공사	○○면 ○○리 000-0	400	2020.03.26. ~ 2020.12.02.	노유자시설 (경로당)	107.19	소요기간 예산부족	80	○○ ○○과
○○주차장 화장실공사	○○동 0000-00	96	2018.03.09. ~ 2018.06.01.	공중화장실 (남·여)	24.77	소요기간 예산부족	개선불가 (면적협소)	○○ ○○과
○○주차장 화장실공사	○○면 ○○리 0000	94	2018.05.28. ~ 2018.07.11.	공중화장실 (남·여)	26.93	소요기간 예산부족	개선불가 (면적협소)	○○ ○○과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 시설

대상 시설		비고
1.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 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 ·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대상 시설		비고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塗裝),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 등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BF 인증에 따른 소요예산, 소요기간 등으로 BF인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앞으로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BF인증 절차 미이행 등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 BF인증 절차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 요구 및 통보

제 목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한 마을어업장(양식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해안연결 도로를 완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 견인차 역할과 원활한 농특산물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숙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어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어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고
			계	도급	관급			
○○어장 진입로 개설공사	○○면 00리	진입로 개설 370m	314	297	17	2020. 5. 25. ~ 2021. 3. 18.	0000(주)	자체사업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할 수 있고,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의 기부서(재산의 표기,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기부목적, 재산가격, 소유권 증명서류, 도면 등)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sup>1)</sup>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기부채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 어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되는 토지를 사천시와 개인이 상호 기부채납에 합의하였다면 우선 기부서를 제출 받아서 사권설정 여부 등 기부채납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부채납을 결정해야 하며, 동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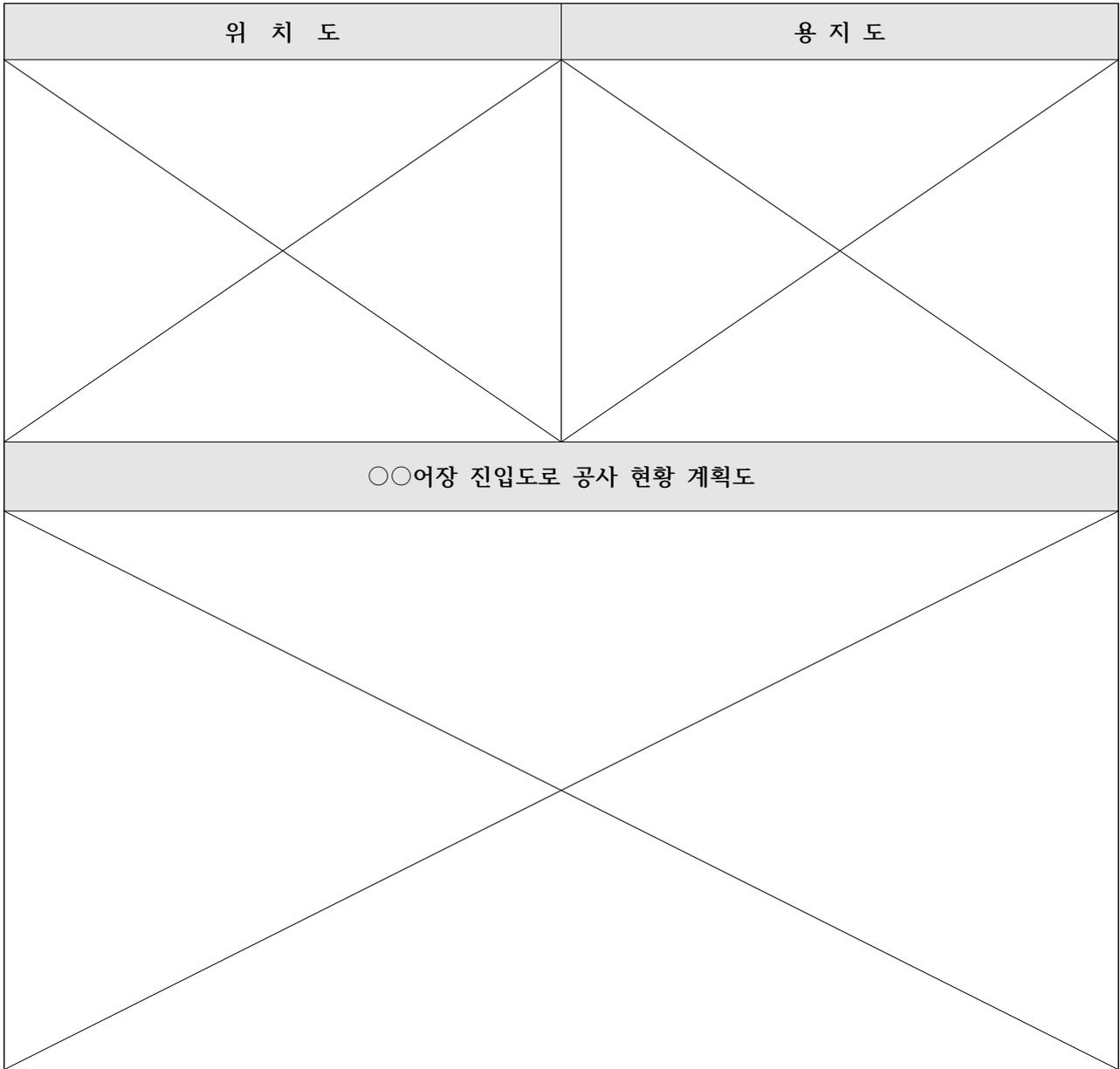
그런데 사천시 ○○○○과에서는 2017. 10. 11. 사천시장의 ○○ 어장 진입로 개설 검토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13. ○○마을 진입로 개설 건의서(○○어촌계장 등 12명) 제출, 같은 해 12. 11.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과-00000호), 2019. 1. 14. ○○ 어장진입로 개설 관련 추진사항 보고(○○○○과-0000호) 등을 거쳐 『○○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현황 계획도 및 [표 2] 토지편입 조서와 같이 공유수면은 1,000㎡ 이하의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sup>2)</sup>으로 추진하되 잔여구간인 육지부는 사천시 ○○면 ○○리 000외 2필지, 1,434㎡(지목 : 전·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기부채납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1) 사권의 종류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시행하는 1,000㎡이하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 면허처분에 관한 사항은 매립기본계획(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에 관계없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

[그림] 현황 계획도



[표 2] 토지편입 조서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계	4개소		10,207	2,302		
1	○○면 ○○리 000-0	전	219	122	○○○	기부채납
2	○○면 ○○리 000	전	281	172	○○○	기부채납
3	○○면 ○○리 000-0	임	9,707	1,140	○○○	기부채납
4	○○면 ○○리	-	-	868	공유수면	해역이용협의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2017. 12. 26.부터 2018. 4. 24.(5개월)까지의 실시설계용역, 2020. 5. 25.부터 2021. 3. 18.(9개월)까지의 공사기간 등 도로개설 완료시점까지 기부채납 결정,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17. 12. 11.과 2021. 3월 토지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기부채납 동의서를 청구할 당시에는 금융기관에서 공동담보 물건으로 채권최고액 871백만 원, 1,560백만 원에 달하는 저당권(사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이행불능 상태였다.

그 결과 기부채납도 없이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됨으로써 개인재산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가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양수산부 해역이용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담당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숙지 부족 등으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기부채납 동의서 공증인 각서, 금융기관의 저당권 해지 동의서 등을 토대로 기부채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 ① 기부채납 결정,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재산에 공용도로가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실무책임자 ○○○○과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기부채납 동의서 공증인 각서, 금융기관의 저당권 해지 동의서 등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결정,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절차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임업용산지 내 산지전용 협의 소홀

소 관 기 관 사천시(0000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0000과에서는 산지전용신고·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협의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업용산지안에서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이 가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sup>3)</sup>을 배출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sup>4)</su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

3) 특정대기유해물질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염소 및 염화수소, 석면,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등 35종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sup>5)</sup>을 배출하는 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sup>6)</sup>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sup>7)</sup>을 배출하는 시설(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협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업용 산지 안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한 후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0000과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17. 0000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천시 00면 00리 산00번지 외 3필지의 임업용산지 20,040㎡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주)○○’의 산지전용협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공장의 제조품,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체 검토 없이 산지전용 협의 처리한 사실이 있다.

#### 4)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5) 특정수질유해물질 :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등 14종

#### 6)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종 별	배출규모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위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표】 (주)OO 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내역**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
- 업종(분류번호)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20)
- 산림소재지 : 사천시 OO면 OO리 산OO, 산OO-O, 산OO-O, 산OO-OO
- 전용면적 : 20,040㎡(보전산지/임업용산지)

구분	신청일	승인일	전용면적(㎡)/ 용도지역	허가(변경) 내역
최초	2013. 6. 17.	2013. 7. 26.	20,040/임업용산지	○ 관련 법에 의한 최초 승인
변경	2015. 6. 10.	2015. 8. 12.	19,568/임업용산지	○ 부지면적 변경(20,040→19,568㎡) - OO면 OO리 산OO 외 3필지 → 산OO ○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기간 연장 ○ 도로점용 허가 변경
변경	2017. 6. 29.	2017. 7. 16.	19,568/임업용산지	○ 대표자 변경(OOO→OOO) ○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기간 연장
변경	2019. 12. 2.	2020. 12. 16.	19,568/임업용산지	○ 대표자 변경(OOO→OOO) ○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기간 연장 - 2021. 12. 30.까지

출처) 사천시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OOOO과에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분류)상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산지전용 후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 등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며, 앞으로 수허가자의 자격요건, 사업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 ① 임업용산지안에서 행위제한 시설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임업용산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산지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OO주사

000(현 0000과), 실무책임자 지방00사무관 000(현 00면장)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아울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농지 전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00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00과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판단기준)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주(主)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에도 주(主)목적 사업에 따라 해당 농지의 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사업<sup>8)</sup>만 가능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농업

---

8)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주목적 사업이 농업용시설, 국방·군사 시설 등 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한 시설의 설치에 대해 가능함(아파트 건설 등 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하지 않은 행위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불가함)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인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처리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OO과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동 OO-0에 000이 일반음식점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농지에 불법축조물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없이 이를 그대로 전용허가하였고,

또한 OO면 OO리 0000-0에 0000가 건설중장비 주기장으로 전용하여 해당사업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농지를 농지전용이 아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하였으며, OO면 OO리 000-00 등 5필지의 농지에 주(主)목적 사업이 아파트건설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주)000000, (주)000000, (주)00000000의 아파트 공사 임시 야적장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농지 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부적정 처리 현황**

구분	신청인	신청목적	허가일 (일시사용기간)	농지소재지	전용면적 (㎡)	용도지역
계	5건			7필지	17,050	
전용허가	000	일반음식점	2020.11.16.	000	268	자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밖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0000	건설중장비 주기장	2017.3.2. (‘17.3.10.~’22.2.28.)	OO면 OO리	2,972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밖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주)000000	아파트 공사 임시 야적장	2018.2.27. (‘18.3.1.~’20.3.1.)	OO면 OO리	4,720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주)00000000	아파트 공사 임시 야적장	2018.6.5. (‘18.6.5.~’20.5.20.)	OO면 OO리	4,701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주)000000000	아파트 공사 임시 야적장	2018.8.22. (‘18.8.25.~’20.7.31.)	OO면 OO리	4,389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출처) 사천시 제출 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OO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농지전용 담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꾸준한 업무연찬 및 직무연구를 통해 농지법 등 해석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 ① 계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한 실무담당자 지방OO주사 000(현 OO과),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OO주사보 000(현 OO면), 실무담당자 지방OO주사 000(현 0000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아울러 사천시 OO과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000과, 00동, 00면)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읍·면·동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영농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지 확인 시 농지로 이용되기 어려운 농지 등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 아니되고,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므로, 세대합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경영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영농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지 확인 시 농지로 이용되기 어려운 농지 등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 아니되고,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므로, 세대합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OO면에서는 【표】와 같이 있는 OO동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에 대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서 상에 ‘축종(또는 재배 작목)’, ‘영농 착수시기’,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축사’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OO동 000, 000번지는 소나무가 입목되어 임야화된 농지로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함에도 ‘농업경영(관상수 재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동 000번지는 현지 확인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OO면, OO면에서는 개인 및 세대합산 농지취득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받지 아니하고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처리 부적정 내역**

○ 농업경영계획서 검토 부적정

구분	신청인	접수일	처리일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목적	취득면적 (m <sup>2</sup> )	농업경영 계획서	비고
1	OOO	2019.09.16.	2019.09.18.	OOOOO	답	농업경영	113	추종영농능력, 노동력, 확보방안 등 기재 없음	축사
2	OOO	2019.09.03.	2019.09.04.	OOOOO	답	농업경영	174		축사
3	OOO	2019.09.03.	2019.09.04.	OOOOO	답	농업경영	17		축사
4	OOO	2019.09.03.	2019.09.04.	OOOOO	답	농업경영	236	관상수	축사
5	OOO	2019.09.03.	2019.09.04.	OOOOO	답	농업경영	254		축사
6	OOO	2019.10.25.	2019.10.28.	OOOOO	답	농업경영	206	관상수	축사
7	OOO	2019.10.25.	2019.10.28.	OOOOO	답	농업경영	17		축사
8	OOO	2019.10.22.	2019.10.25.	OOOOO	답	농업경영	139	채소	임야 (관상수 재배불가)
9	OOO	2019.10.22.	2019.10.25.	OOOOO	답	농업경영	155		임야 (관상수 재배불가)
10	OOO	2020.6.11.	2020.6.12.	OOOOO	전	농업경영	271		현지확인 사실없음

○ 주말체험영농 발급 부적정

구분	신청인	주소	접수일	처리일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목적	취득면적 (m <sup>2</sup> )	비고
1	OOO	OOO	2017.1.11.	2017.1.12.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843	세대합산 1,808(m <sup>2</sup> ) ※808m <sup>2</sup> 초과
	OOO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61	
	OOO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843	
	OOO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61	
2	OOO	OOO	2017.2.28.	2017.3.2.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593.5	세대합산 1,187(m <sup>2</sup> ) ※187m <sup>2</sup> 초과
	OOO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593.5	
3	OOO	OOO	2017.3.28.	2017.3.28.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1,734	※734m <sup>2</sup> 초과
4	OOO	OOO	2017.3.30.	2017.3.30.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251.5	세대합산 1,318(m <sup>2</sup> ) ※318m <sup>2</sup> 초과
	OOO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407.5	
	OOO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251.5	
	OOO				OOOOO	답	주말체험영농	407.5	

출처)사천시 제출 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관련부서(000과, 00동, 00면)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 사안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관련자들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농업경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00동 실무담당자 지방00주사보 000(현 000), 세대별 합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처리한 00면 실무담당자 지방00주사 000(현 0000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아울러 사천시 000과에서는 농지취득 관련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읍·면·동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축산물 위생업소 등 위생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해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위생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 2. 축산물 판매업소 등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가중처분<sup>9)</sup>하여 과태료를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8년 132명의 교육대상자 중 22명, 2019년 141명의 교육대상자 중 16명, 총 38명이 위생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7,60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1】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위생업소	대표자	과태료 미부과				비고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총계			2018	4,400	2019	3,200	
1	○○○○	○○○	2018	200	2019	200	
2	○○○○	○○○	2018	200	2019	200	
3	○○○○	○○○	2018	200	2019	200	
4	○○○○	○○○	2018	200	2019	200	
5	○○○○	○○○	2018	200	2019	200	
6	○○○○	○○○	2018	200	2019	200	
7	○○○○	○○○	2018	200	2019	200	
8	○○○○	○○○	2018	200	2019	200	
9	○○○○	○○○	2018	200	2019	200	
10	○○○○	○○○	2018	200	2019	200	
11	○○○○	○○○	2018	200	2019	200	
12	○○○○	○○○	2018	200	2019	200	
13	○○○○	○○○	2018	200	2019	200	
14	○○○○	○○○	2018	200	2019	200	
15	○○○○	○○○	2018	200	2019	200	
16	○○○○	○○○	2018	200	2019	200	
17	○○○○	○○○	2018	200			
18	○○○○	○○○	2018	200			
19	○○○○	○○○	2018	200			
20	○○○○	○○○	2018	200			
21	○○○○	○○○	2018	200			
22	○○○○	○○○	2018	200			

출처 :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과-○○○(2021.1.7.)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20년 교육대상자는 당초 2020.1.1.~2020.12.31. 기간 내에 의무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나 2021.6.30.까지 이수기간 연장 됨.

### 3. 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소 품목 등 실적보고 관리·감독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sup>10)</sup>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생산실적을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서 실적보고 미이행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2019년 생산실적 보고대상 17개소 중 5개소, 2020년 22개소 대상 중 1개소에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80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2】 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소 생산실적 미보고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업소명	영업자	제출기한	미부과 과태료	비고
총계	6개소			1,800	
1	○○○○	○○○	2020.2.29	300	
2	○○○○	○○○	2020.2.29	300	
3	○○○○	○○○	2020.2.29	300	
4	○○○○	○○○	2020.2.29	300	
5	○○○○	○○○	2020.2.29	300	
6	○○○○	○○○	2021.2.29	300	

출처 :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0) ○○○○과-\*\*\*(20\*\*.\*.\*)호, 20\*\*년도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변경 전 2020.1.31.까지, 변경 후 2020.1.1.~2.29.)  
○○○○과-\*\*\*\*(20\*\*.\*.\*)호, 20\*\*년도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변경 전 2021.1.31.까지, 변경 후, 2021.1.1.~2.28.)

#### 4. 축산물 위생법 위반업체 미공표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 제3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6조 또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 하여야 하나,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 3】 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축산물의 제품명,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

**【표 3】 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처분 미공표 현황**

연번	업종	업소명 (영업자)	적발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	비고
1	식육가공업	○○○○ (○○○)	2019.09.24	이물혼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	
2	식육가공업	○○○○ (○○○)	2020.01.09	이물혼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	
3	식육가공업	○○○○ (○○○)	2020.08.11	이물혼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	
4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 (○○○)	2020.11.16.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 ○○○○○○○○ (○○○○○○○○○○○○)	

출처 :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축산물 위생업무, 방역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으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관련 법규 숙지 후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제34조에 따라 기본 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주사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품목 등 실적 미보고자에게 과태료 9,400천 원을 “**부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축산물 위생법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시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자사광고<sup>11)</sup>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1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자사광고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함.

한편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시 해당 광고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인 경우 타사광고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대상 기간(2017. 10. 1.~ 감사일 현재) 동안 사천시 ○○과의 옥외광고물 허가 내역을 검토한 결과 녹지지역은 광고물 설치 허가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자사광고만 설치할 수 있음에도 아래 【표 1】과 같이 2건의 타사광고 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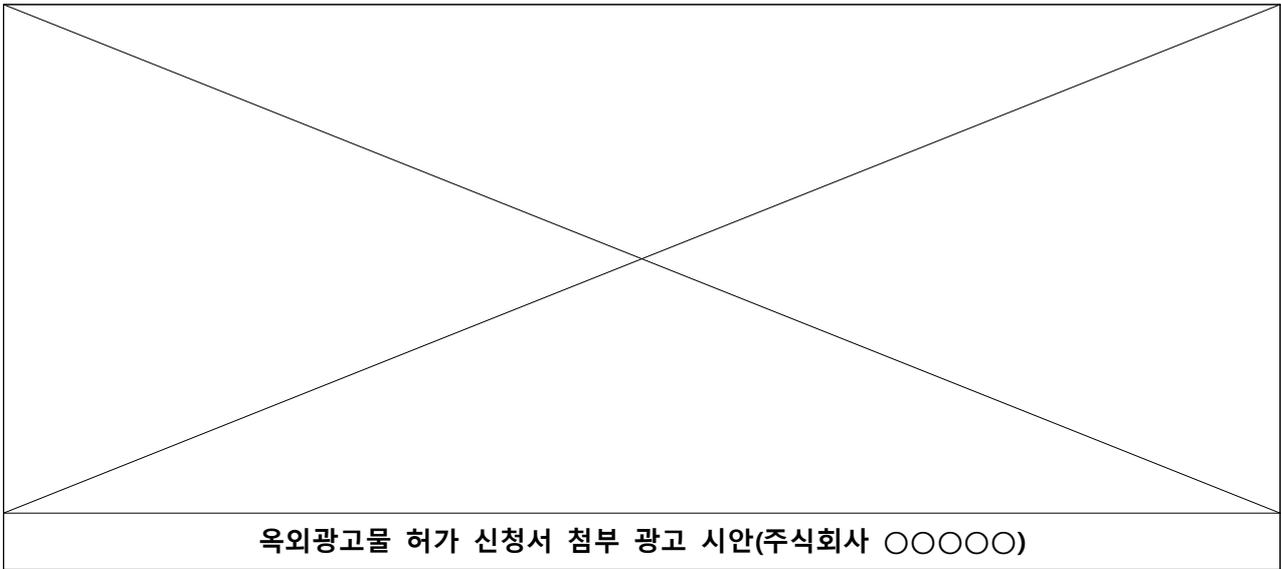
특히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서류를 보면 광고주인 (주)○○○○○(대표: ○○○)는 ○○○ 관련 업을 하는 회사로 ○○○○○(○○○: ○○○)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업체이며, 신청서에 첨부된 【그림】의 광고 시안을 보더라도 타사광고 시안임이 분명함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표 1】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부적정 현황**

연번	구분	허가 신고일	연장 신고일	표시시작일자	광고물 종류	업소명	표시 내용	표시장소	용도 지역	비고
1	허가	-----	-	-----	벽면이용 간판 (가로형)	주식회사 ○○ ○○○	○○○ ○○	사천읍 ○○○○로 ○○○-○○	자연 녹지 지역	타사 광고
2	허가	-----	-	-----	벽면이용 간판 (가로형)	주식회사 ○○ ○○○	○○○ ○○	사천읍 ○○○○로 ○○○-○○	자연 녹지 지역	타사 광고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림】 옥외광고물 광고 시안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후속조치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의 관리자등에게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30일 전에 해당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안내를 하고,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일 현재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록대장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1,760건의 옥외광고물 중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옥외광고물이 54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과에서는 이들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하여 연장허가 대상임을 통보만 하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0조의3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541건이 모두 불법광고물로 방치되고 있다.

【표 2】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현황

구분	연장 대상 (표시종료 일자도래)	연장	미연장					비고
			계	미계고	계고			
					계	행정 대집행	대집행 미이행	
계	1,760	1,219	541		541		541	
~ 2017	---	---	---		---		---	
2018	---	---	---		---		---	
2019	---	---	---		---		---	
2020	---	---	---		---		---	
2021	---	---	---		---		---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에서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업무연찬 부족에 있으며, 자사광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허가를 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독려하여 미연장되는 광고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 ①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타사광고를 허가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또한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등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사광고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경고 및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등 25개 부서)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각 사용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있다.

### 2.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인사부서 사전협의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정수책정)에 따르면 책정된 정수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무원과 달리 사용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채용)에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하며, 채용 전 반드시 인사부서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용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자체 채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인사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대상 기간 동안 사전협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천시의 22개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52건 977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소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협의 미이행

연번	부서(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건수	채용인원(명)	사전협의
합계	22			152	977	
1	○○과	2018	불법○○○ 조사 및 ○○○대장 자료정비 업무보조	1	2	미이행
2	○○과	2020	○○○○○ 극복 희망○○○ ○○실태조사	1	10	미이행
3	○○과	2018	○○○○○○원	1	1	미이행
4	○○○○○과	2018	○○일자리 및 ○○○○지원사업 전담인력 등	1	2	미이행
5	○○○○○과	2019	업무보조	1	36	미이행
6	○○○○○과	2020	업무보조	1	43	미이행
7	○○과	2017	○○○○가격조사 업무보조	1	2	미이행
8	○○과	2018	○○○ ○○○ ○○ 일제정비 업무보조	3	6	미이행
9	○○과	2019	○○○ ○○○ ○○ 일제정비 업무보조 등	5	6	미이행
10	○○과	2020	○○○ ○○○ ○○ 일제정비 업무보조	2	3	미이행
11	○○○○과	2018	실내○○○ 안내 및 ○○관리 등	2	7	미이행
12	○○○○과	2019	○○○○시설관리	1	5	미이행
13	○○○○과	2020	○○○○○ 극복 ○○○○○사업(○○분야)	2	11	미이행
14	○○○○과	2017	○○○○○○○○○○운영 및 관리	2	3	미이행
15	○○○○과	2018	사천○○의○○ ○○시설 관리(기간연장)	1	1	미이행
16	○○○○과	2019	○○○○프로그램 관리 및 홍보	2	3	미이행
17	○○○○과	2020	○○○○○ 극복 희망○○○사업(○○분야)	1	6	미이행
18	○○○○과	2017	○○○○○○구역 관리	1	1	미이행
19	○○○○과	2018	○○○○○○구역 관리 등	4	18	미이행
20	○○○○과	2019	○○○○○○구역 관리 등	5	8	미이행
21	○○○○과	2020	○○○○○○구역 관리 등	3	5	미이행
22	○○○○과	2018	○○○○○○장 환경정비 일시사역 등	7	31	미이행
23	○○○○과	2019	봄철 ○○○○○○○장 ○○○작업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 등	6	30	미이행

연번	부서(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 건수	채용인원 (명)	사전 협의
24	○○○○과	2020	○○○○○○장 ○○작업을 위한 환경정비 일시사역 등	4	14	미이행
25	○○○○과	2017	○○지도담당 불법○○○과태료 업무보조	1	1	미이행
26	○○○○과	2018	공영○○○ 관리	1	2	미이행
27	○○○○과	2019	○○○○ 수입금 실사 보조	1	1	미이행
28	○○○○과	2020	○○○○○○ 실태조사	1	6	미이행
29	○○○○과	2018	2017년 기준 ○○○조사 등	3	10	미이행
30	○○○○과	2019	2018년 기준 ○○○조사 등	4	19	미이행
31	○○○○과	2020	2019년 기준 ○○○조사 등	5	34	미이행
32	○○○○과	2018	여름철 ○○○지역 ○○○○ 예방	1	6	미이행
33	○○○○과	2019	여름철 ○○○지역 ○○○○ 예방 등	3	7	미이행
34	○○○○과	2020	○○○○○ ○○○○○원스톱 도우미센터	2	16	미이행
35	○○과	2020	○○○○○ 극복 ○○○○○ ○○실태조사	1	10	미이행
36	○○과	2018	2018년○○○○○정비기간제	1	6	미이행
37	○○○○과	2017	○○○상담원 등	1	1	미이행
38	○○○○과	2018	○○○상담원 등	1	1	미이행
39	○○○○과	2020	○○○○○○○○○○○○○○ 매표 및 검표, 안내 및 해설 등	3	11	미이행
40	○○○○과	2019	○○○○○사천○○○○ 등	4	14	미이행
41	○○○○과	2018	○○○○○○○○○○○○○○ 매표 및 검표, 안내 및 해설 등	5	14	미이행
42	○○○○과	2017	○○○○○○○○○○○○○○ 매표 및 검표, 안내 및 해설 등	1	8	미이행
43	○○○○과	2017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 목적 등	3	145	미이행
44	○○○○과	2018	○○관리원 등	20	277	미이행
45	○○○○과	2019	○○○○관리원 등	13	76	미이행
46	○○○○과	2020	○○관리원	1	3	미이행
47	○○○○과	2017	동절기 특별 ○○○○	1	4	미이행
48	○○○○과	2018	해빙기(봄철) ○○○○등	3	16	미이행
49	○○○○과	2019	해빙기(봄철) ○○○○ 등	4	17	미이행
50	○○○○과	2021	2021년 ○○○관리 기간제근로자	1	1	미이행
51	○○○○과	2018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3	6	미이행
52	○○○○과	2019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3	6	미이행
53	○○○○과	2020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1	2	미이행
54	○○○○과	2021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1	2	미이행
55	○○○○과	2018	○○○종합○○센터 운영보조	1	1	미이행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실시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하며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지 곤란한 경우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용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반드시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신속한 충원이나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대상 기간 동안 사천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매년 반복적인 업무 등으로서 인력의 수요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표 2】와 같이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내 ○○○ 행정업무 및 ○○○·○○○ 업무보조 등 25건 8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실시 현황**

연번	부서 (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성명	채용인원 (명)	선발 방법	비고
합계	8					89		
1	○○ ○○과	2018	실내○○○ 행정업무 및 ○○○,○○○ 업무보조	2018. 7. 10 ~2018.12.31.	○○○	1	서류 심사	
2	○○ ○○과	2017	○○국민○○ ○○○운영및관리	2017. 11. 6. ~2017.12.31.	○○○ 등	2	부서자체 선발	

연번	부서 (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성명	채용인원 (명)	선발 방법	비고
3	○○ ○○과	2017	○○○보호구역 관리	2017.11.1. ~2018.12.31.	○○○	1	면장 추천	
4	○○ ○○과	2017	취약시간대 ○○○○시설 순찰	2017.11. ~2018.03.	○○○ 등	2	주민 추천	
5	○○ ○○과	2017	취약시간대 ○○○○시설 순찰	2017.08. ~2017.10	○○○ 등	4	주민 추천	
6	○○ ○○과	2018	○○○보호구역 관리	2018.1.1. ~2018.12.31.	○○○ 등	2	면장 추천	
7	○○ ○○과	2018	○○쉼터 관리	2018.2.1. ~2018.12.31.	○○○	1	면장 추천	
8	○○ ○○과	2018	○○○관리지역 ○○구축기초자료조사	2018.7.9. ~2018.12.31.	○○○	1	면장 추천	
9	○○ ○○과	2018	취약시간대 ○○○○○시설 순찰	2018.06.01. ~2018.10.31.	○○○ 등	14	주민 추천	
10	○○ ○○과	2019	○○○보호구역 관리	2019.1.7. ~2019.12.31.	○○○ 등	4	면장 추천	
11	○○ ○○과	2019	○○쉼터 관리	2019.2.13. ~2019.6.30.	○○○ 등	2	면장 추천	
12	○○ ○○과	2019	○○○관리지역 ○○구축기초자료조사	2019.1.7. ~2019.3.21.	○○○ 등	2	면장 추천	
13	○○ ○○과	2019	취약시간대 ○○○○○시설 순찰	2019.06. ~2019.11.	○○○ 등	10	주민 추천	
14	○○ ○○과	2020	○○○보호구역 관리	2020.2.10. ~2020.12.31.	○○○ 등	4	면장 추천	
15	○○ ○○과	2020	○○쉼터 관리	2020.2.17. ~2020.12.31.	○○○	1	면장 추천	
16	○○ ○○과	2021	○○○보호구역 관리	2021.1.4. ~2021.7.31.	○○○ 등	5	면장 추천	
17	○○ ○○과	2021	○○쉼터 관리	2021.4.1. ~2020.12.31.	○○○	1	면장 추천	
18	○○ ○○과	2018	○○○○○○○장 ○○안전 관리○○	2018.07.01. ~2018.08.17.	○○○ 등	6	읍면동 추천	
19	○○ ○○과	2019	○○○○○○○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2019.07.01. ~2019.09.01.	○○○ 등	3	읍면동 추천	
20	○○ ○○과	2020	○○○○○○○ 실태조사	2020.11.16. ~2020.12.18.	○○○ 등	6	부서자체 선발	
21	○○ ○○과	2019	여름철 ○○○지역 ○○○○ 예방	2019.6.24. ~2019.8.25.	○○○ 등	7	읍면동장 추천	
22	○○ ○○과	2018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8.03.01. ~2018.12.31.	○○○ 등	2	동장 및 ○○위원회 추천	
23	○○ ○○과	2019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9.03.01. ~2019.12.31.	○○○ 등	2	동장 및 ○○위원회 추천	
24	○○ ○○과	2020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0.03.01. ~2020.12.31.	○○○ 등	2	동장 및 ○○위원회 추천	
25	○○ ○○과	2017	동절기 특별 ○○○○	2017.11.01. ~2017.11.30.	○○○ 등	4	-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4.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간 부당 단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용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신속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단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10일상 공고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사천시 사용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을 검토한 결과 예측하지 못한 질병, 재해, 기타 사건 등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정도 없이 【표 3】과 같이 2018년 ○○○ ○○정비 기간제 등 40건 225명을 채용하면서 적게는 2일부터 많게는 8일까지 채용공고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였다.

【표 3】 채용공고 기간 단축 현황

연번	부서 (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성명	채용 인원 (명)	공고 단축기간 (일)
합계	11					225	
1	○○과	2018	2018년 ○○○ ○○정비 기간제	2018.4.2. ~2018.11.30	○○○ 등	6	8
2	○○과	2019	2019년 ○○○ ○○정비 기간제	2019.4.1. ~2019.11.22	○○○	6	6
3	○○ ○○과	2018	○○관리원	2018.1.2. ~2018.12.31.	○○○	1	3
4	○○ ○○과	2018	2018년 ○○○현장예방단	2018.05.15. ~2018.09.30.	○○○ 등	6	6

연번	부서 (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성명	채용 인원 (명)	공고 단축기간 (일)
5	○○ ○○과	2018	2018년 ○○○○지도사	2018.02.05. ~2018.12.31.	○○○ 등	2	5
6	○○ ○○과	2018	2018년 ○○○ 및 2019년 ○○ ○○○○ 목적	2018.10.22. ~2019.05.15.	○○○ 등	39	4
7	○○ ○○과	2018	○○○○○○예찰○○단	2018.09.03. ~2019.06.30	○○○ 등	23	4
8	○○ ○○과	2018	○○○○○○○○수집단	2018.09.03. ~2019.06.30	○○○ 등	5	4
9	○○ ○○과	2018	○○○○자원조사단	2018.09.03. ~2019.06.30	○○○ 등	2	4
10	○○ ○○과	2019	○○관리원	2019.1.2. ~2019.12.31.	○○○	1	6
11	○○ ○○과	2020	○○○○관리원	2020.1.20. ~2020.12.30.	○○○	1	5
12	○○ ○○과	2019	○○작업단	2019.09.02. ~2020.06.30	○○○ 등	6	4
13	○○ ○○과	2019	2019년 ○○○현장예방단	2019.05.15. ~2019.08.30.	○○○ 등	6	4
14	○○ ○○과	2019	2019년 ○○○○지도사	2019.02.18. ~2019.12.27.	○○○	1	5
15	○○ ○○과	2019	○○○○자원조사단	2019.09.02. ~2020.06.30	○○○	1	4
16	○○ ○○과	2019	○○○○○○예찰○○단	2019.09.02. ~2020.06.30	○○○ 등	21	4
17	○○ ○○과	2020	○○관리원	2020.1.20. ~2020.12.31.	○○○	1	5
18	○○ ○○과	2020	○○○유지관리단	2020.9.22. ~2020.12.30.	○○○ 등	7	4
19	○○ ○○과	2018	○○일자리 및 ○○○○지원사업 전담인력	2018.01 ~2018.12	○○○ 등	2	4
20	○○ ○○과	2019	○○○○기본서비스	2019.01 ~2019.12	○○○ 등	51	2
21	○○ ○○과	2019	○○○○ 운영 및 ○○차량 운영	2019.3.1. ~2019.5.31	○○○	1	2
22	○○ ○○과	2019	○○○○ 운영 및 ○○차량 운영	2019.6.1. ~2019.12.31	○○○	1	4
23	○○과	2019	○○○○○○원	2019.6.21. ~2020.6.20.	○○○	1	6
24	○○과	2020	○○○○○○원	2020.6.21. ~2021.6.20.	○○○	1	6
25	○○과	2020	○○○○○○원	2020.6.21. ~2020.12.31.	○○○	1	6

연번	부서 (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성명	채용 인원 (명)	공고 단축기간 (일)
26	○○ ○○과	2017	○○○○○ 업무보조	2018.1.16. ~2018.8.31	○○○	1	4
27	○○ ○○과	2018	○○○○교사지원사업	2018.1.1. ~2018.12.31	○○○	8	6
28	○○○○ ○○소	2018	○○○ 생활민원 처리	2018.1.1. ~2018.12.31.	○○○	1	4
29	○○○○ ○○소	2021	○○○ 생활민원 처리	2021.1.1. ~2021.8.31.	○○○ 등	2	6
30	○○ ○○과	2018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8.02.01. ~2018.11.30.	○○○ 등	3	3
31	○○ ○○과	2019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9.02.01. ~2019.11.30.	○○○ 등	3	2
32	○○ ○○과	2020	○○○○관리사업(AI·IoT기반 ○○○ ○○관리 시범사업)	2020.09.14. ~2020.12.31.	○○○ 등	2	2
33	○○과	2018	○○○ ○○○ 감면 일제정비 업무보조	2018.03.02. ~2018.12.31.	○○○	1	2
34	○○ ○○과	2018	○○○종합○○센터 운영보조	2018.08.20. ~2018.12.31.	○○○	1	3
35	○○ ○○과	2018	○ ○○○ 업무 보조	2018.12.01. ~2019.11.30.	○○○ 등	5	3
36	○○ ○○과	2018	○○○○실 업무보조	2018.09.01. ~2018.12.31.	○○○	1	2
37	○○ ○○과	2018	○○○○개발시설 업무 보조	2019.01.01. ~2019.12.31.	○○○	1	3
38	○○ ○○과	2019	○○○○시설(○○○○실) 업무 보조	2019.02.01. ~2019.12.31.	○○○	1	3
39	○○ ○○과	2018	○○○○ 및 ○○요원	2018.8.13. ~2018.12.31.	○○○	1	4
40	○○ ○○과	2018	실내○○○ ○○○○○ 검 ○○관리요원	2018.7.1. ~2018.12.31.	○○○	1	3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5.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하며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용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실기시험 등의 선발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에서 정한 선발방법에 따라 응시자를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면접전형을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2건의 2018년도 ○○관리원 채용의 경우 당초 채용계획에서는 합격자 선발방법으로 서류전형을 선택하고 있으나, 계획에도 없는 면접을 담당팀장 단독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2018년 ○○관리원, 2019년 ○○관리원 및 ○○○○관리원 채용의 경우 당초 채용계획에서 선발방법으로 면접전형을 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채용계획이나 별도의 면접계획에서 조차 누가 면접을 진행할 것인지 면접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며, 면접위원을 구성도 하지 않고 담당팀장 단독으로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게다가 2018년 ○○○ 및 2019년 ○○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도 면접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면접위원도 구성하지 않고, 담당팀장 외 1명이 면접을 진행하였고, 2019년 ○○○○○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면접계획을 변경도 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서 정한 면접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한편 2017년 ○○○ 및 2018년 ○○ ○○○○, 2020년 ○○○○ ○○사 채용 시에는 【표 5】와 같이 채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서 정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채용면접 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부서 (개)	연도	채용목적	채용기간	채용 인원(명)	선발방법	면접 위원	위반사항
합계	2				42			
1	○○ ○○과	2018	○○관리원	2018.1.15. ~2018.12.28.	10	서류전형	미구성	채용계획에 없는 면접 실시 (○○팀장 ○○○)
2	○○ ○○과	2018	○○관리원	2018.5.21. ~2018.12.28.	6	서류전형	미구성	채용계획에 없는 면접 실시 (○○팀장 ○○○)
3	○○ ○○과	2018	○○관리원	2018.1.2. ~2018.12.31.	2	면접전형	미구성	○○담당 ○○○ 면접 실시
4	○○ ○○과	2019	○○관리원	2019.1.21. ~2019.12.24.	8	서류 /면접전형	미구성	○○팀장 ○○○ 면접 실시
5	○○ ○○과	2019	○○○○관리원	2019.2.25. ~2019.12.30.	1	서류 /면접전형	미구성	○○팀장 ○○○ 면접 실시
6	○○ ○○과	2018	2018년 ○○○ 및 2019년 ○○ ○○○○ 목적	2018.11.01. ~2019.05.15.	14	서류/면접 /실기시험	미구성	○○○○팀장 ○○○ 외 1명 면접 실시
7	○○ ○○과	2019	○○○○○○관 관리	2019.1.1. ~2019.12.31.	1	서류 /면접전형	구성	면접계획과 다른 면접위원 참여 (계획: ○○팀장 ○○○ →실제: ○○팀장 ○○○)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선발계획 초과 채용 현황**

연번	부서 (개)	채용목적	채용 기간	채용계획 (명)	실제 채용인원 (명)	채용 계획 변경	위반사항
합계	1			36	42		
1	○○ ○○과	2017년 ○○○ 및 2018년 ○○ ○○○○ 목적	2017.10.23.~20 18.05.15.	35	40	X	계획변경 없이 당초 채용계획의 선발인원을 5명 초과하여 채용
2	○○ ○○과	2020년 ○○○○ ○○사	2020.06.08.~2 020.10.16.	1	2	X	계획변경 없이 당초 채용계획의 선발인원을 1명 초과하여 채용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사천시에서는 기존 인력의 병가 등 장기적인 이탈과 교대근무의 특성 상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고, 1월 초부터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용계획을 전년도와 아님 당해 연도에 수립하게 되면서 채용이 지연되어 공고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또한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팀장이 약식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계획의 변경 없이 당초 계획과 다른 면접위원이 참여한 이유는 당일 면접시간에 임박하여 해당 위원에 관련 업무로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시간관계 상 다른 면접위원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공고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이유는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수행하고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사전협의 미이행 등 이 건 발생의 원인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정확한 채용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으며,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천시의 채용공고 미실시 및 공고기간 부당 단축 건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매년 반복되는 채용업무로서 해당 업무의 기간제근로자 인력 수요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볼 수 없고, 사천시 주장대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 공고절차를 생략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부당하게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발방법으로 면접전형을 선택하였다면 채용계획이나 별도의 면접계획을 수립하여 누가 면접을 진행할 것인지 면접위원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에 면접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팀장이 약식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천시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당일 면접시간에 임박하여 면접위원이 관련 업무로 불참하게 되더라도 면접위원 변경 공문을 시행하여 다른 위원으로 교체한 후 면접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시간관계 상 이유라는 사유만으로 면접위원 변경 없이 다른 사람이 면접을 진행하게 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사천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채용인원과 관련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채용계획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재공고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수행하고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초 방침받은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였다는 사천시의 주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자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협의 미이행, 채용공고 미실시, 공고기간 부당 단축, 채용면접 업무처리 부적정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 내용을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면접전형을 시행하면서 면접위원을 구성도 하지 않고 담당팀장이 면접을 실시하게 하거나 채용계획의 변경 없이 당초 계획에서 정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당초 면접계획에서 정한 위원과 다른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서기 ○○○, 지방○○서기보 ○○○(현 ○○), 지방○○

주사 ○○○(현 ○○면), 지방○○서기 ○○○, ○○○○과 지방○○주사보  
○○○(현 ○○○○센터)과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사무관 ○○○(현 ○○면), 지방○○주사 ○○○,  
○○○○과 지방○○사무관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선별장 근로자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소)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각 사용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하며,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채용 자격기준,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천시 ○○○○소에서는 2018. 6. 7.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수립한 ‘2018년 사천시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sup>12)</sup>’(○○○○소-○○○○)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선발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2018. 6. 19. 사천시 ○○○○소에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수립한 ‘2018년 ○○○ 선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면접시험 실시계획<sup>13)</sup>’(○○○○소-○○○○)에서는 1차 서류심사

12) (기안) 주무관 ○○○ - (검토) ○○○○팀장 ○○○ - (검토) ○○○○소장○○○ - (검토) ○○국장 ○○○

13) (기안) 주무관 ○○○ - (검토) ○○○○팀장 ○○○ - (검토) ○○○○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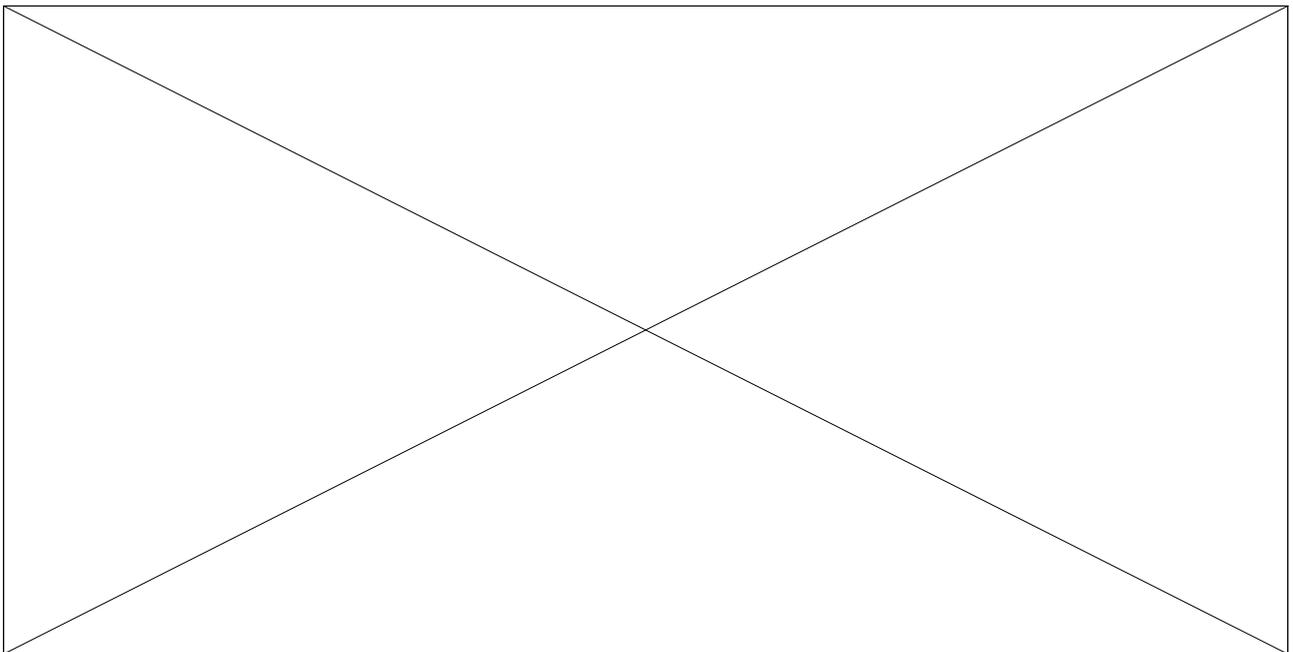
점수와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다점자를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신규근로자, 연소자 순으로 선발하겠다는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시 ○○○○소에서 ○○○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위한 합격자를 선발할 때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점자 발생의 경우는 신규근로자, 연소자 순으로 합격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소에서는 동점자<sup>14)</sup> 3명(모두 신규근로자가 아님)에 대해 **【그림】**과 같이 2018. 6. 19. 수립한 ‘2018년 ○○○ 선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면접 시험 실시계획’(○○○○소-○○○○)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방법에 따라 연소자 순으로 합격순위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림】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점표**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4) 총점 45점으로 동점자인 3명은 동일 업무 경험이 있어 신규근로자가 아님.

- ○○○: 2017. 1. 2. ~ 2017. 11. 30. ○○○○ 선별작업 근무
- ○○○: 2017. 7. 3. ~ 2018. 5. 31. ○○○○ 선별작업 근무
- ○○○: 2017. 7. 3. ~ 2018. 5. 31. ○○○○ 선별작업 근무

이에 따라 사천시 ○○○○소에서는 합격자 5명을 선발하여 2018. 6. 28. ‘2018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면접시험 결과보고15’(○○○○소-○○○○)를 하였고, 같은 날인 2018. 6. 28. 합격자 ○○○이 채용을 포기함16)에 따라 ‘2018년 ○○○선별 기간제 근로자 선발결정 및 사역시행17’(○○○○소-○○○○) 공문을 결재 받고 최종적으로 6순위인 ○○○을 채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합격순위 선정내역을 검토하여 연소자 순으로 정당하게 합격순위를 결정한 결과 동점자 3명 중 ○○○(○○○○○○)이 6순위, ○○○(○○○○○○)가 7순위, ○○○(○○○○○○)은 8순위가 되며,

【표】와 같이 채용된 기존 6순위 ○○○은 8순위가 되어 채용될 수 없었고, ○○○은 기존 7순위에서 6순위로 되는 등 순위를 잘못 결정하여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합격순위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자		취업 보호 · 지원 대상자	부양 가족수	근무경력 (최근 5년이내)	재산세 과세액	면접 (건강상태, 근무자세 등)	합계	기존 순위	정당 순위
	성명	생년 월일								
1	○○○	-----	0	10	5	15	20	50	5	5
2	○○○	-----	0	5	5	10	-	20	9	9
3	○○○	-----	0	10	5	10	20	45	6	8
4	○○○	-----	0	20	5	15	5	45	7	6
5	○○○	-----	0	10	5	20	10	45	8	7
6	○○○	-----	0	10	20	15	10	55	4	4
7	○○○	-----	0	15	20	15	5	55	3	3
8	○○○	-----	0	10	20	25	20	75	1	1
9	○○○	-----	0	5	20	25	10	60	2	2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5) (기안) 주무관 ○○○ - (검토) ○○○○팀장 ○○○ - (검토) ○○○○소장 ○○○

16) 2018. 6. 28. ‘2018년 ○○○○ 선별사업 근로신청 포기서’ 제출

17) (기안) 주무관 ○○○ - (검토) ○○○○팀장 ○○○ - (검토) ○○○○소장 ○○○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에서는 신규근로자의 의미를 잘못 판단하여 동점자 3명 중 ○○○을 신규근로자로 보고 6위로 합격순위(나머지 동점자는 7위, 8위로 결정)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 따른 것이라 답변하였고,

또한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합격순위 산정을 잘못하고 결과적으로 합격자 당락의 변동을 초래한 실무담당자 ○○○○소 지방○○주사보 ○○○(현 ○○면)와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소 지방○○주사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공개채용면접시험 실시계획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방법과 다르게 동점자의 합격순위가 결정된 채용 건과 관련하여 결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면접시험 결과보고를 최종 결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소 지방○○서기관 ○○○(현 ○○○○센터)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또한 최종점수 산정과 합격순위 결정을 잘못하여 채용기회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구제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당초 계획에서 정한 채용방법과 다르게 합격순위를 결정하여 합격자의 당락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 사면 점검로 및 주변사면 응급복구공사 계약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2018. 7. 4. 제7호 태풍 “○○○○” 내습으로 ○○○○ 입구 법면부에 토사유출 되어 추가 유실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2018. 7. 23.부터 9. 18.까지 【표 1】과 같이 ○○○○ 사면 점검로 설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 사면 점검로 및 주변사면 복구공사 시행 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계약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시공사	계약 방법	비고
계		3건	58,008					
○○○○ 사면 점검로 설치공사	사천시 ○○○ ○○○	. 점검로(계단) 설치 L=47m, B=0.9m	19,324	'18.7.20.	'18.7.23. ~ 8.19.	○○○○ (주)	1인 견적 수의계약	(소관) ○○과 (계약) ○○ ○○과
○○○○ 사면 점검로 추가 설치공사		. 점검로(계단) 설치 L=47m, B=0.9m	19,324	'18.8.21.	'18.8.22. ~ 9.18.	○○○○ (주)		
○○○○ 주변사면 응급복구 공사		. 사면 보호공 - 비닐덮기 1,693㎡ - PE그물망 설치 1,693㎡	19,360	'18.8.14.	'18.8.14. ~ 9.11.	○○○○ (주)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2. 분할 발주 금지 위반하여 1인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단일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 사면 점검로 설치공사는 사면 시점에서 종점(정상부)까지 사면 점검 위해 점검계단을 설치(L=94m)하는 단일공사로 【표 2】와 같이 기초금액이 43,920천 원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임에도 기초금액을 각각 21,960천 원으로 시기적으로 공사량을 분할하여 2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건으로 ○○○○과에 계약을 의뢰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부서인 ○○○○과에서는 ○○과의 계약 의뢰 내용대로 시기적으로 공사량을 분할하여 2018. 7. 20.과 2018. 8. 21. 각각 계약금액 19,324천 원으로 ○○○○(주) 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그 결과 단일공사로 발주한 것에 비해 111천 원 예산을 낭비 하였으며, 시공자 격을 가진 타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였다.

**【표 2】 ○○○○ 사면 점검로 설치공사 분할(계약)발주 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기 초 금 액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사 업 기 간	시 공 회 사	계 약 방 법	계 약 부 서
<b>계</b>			<b>43,920</b>	<b>38,648</b>					
○○○○ 사면 점검로 설치공사	사천시 ○○○ ○○	· 점검로(계단) 설치 L=47m, B=0.9m	21,960	19,324	'18.7.20	'18.7.23. ~ 8.19.	○○○○ (주)	1인 견적 수의계약	○○ ○○과
○○○○ 사면 점검로 추가 설치공사		· 점검로(계단) 설치 L=47m, B=0.9m	21,960	19,324	'18.8.21	'18.8.22. ~ 9.18.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3. 설계내역서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 4.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하고,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 및 원가계산 자료(표준품셈 등)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공사 설계내역서를 관련 법과 원가계산 자료(표준품셈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설계내역서를 과잉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 사면 점검로 설치공사 등 3건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건설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인 표준품셈 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표 3】과 같이 잡철물 제작의 불필요 공정을 포함하고 철공 투입인력을 과소 적용하였으며 지세할증도 중복 반영하여 점검로 설치단가 및 사면보호공 설치단가를 과잉 계상함으로써 공사비를 9,088천 원을 과다 계산하여 계약부서인 ○○○○과에 계약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과의 계약의뢰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계기준 보다 과다 공사비를 지급하여 9,088천 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표 3】 원가계산에 따른 공사비 재산정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비(천 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58,008	48,920	△9,088	
○○○○ 사면 점검로 설치공사	비탈면 점검로 설치 단가산출서 조정 (잡철물 제작(간단) 제외, 철공 0.21인→0.51인)	19,324	16,285	△3,039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오류
○○○○ 사면 점검로 추가 설치공사	비탈면 점검로 설치 단가산출서 조정 (잡철물 제작(간단) 제외, 철공 0.21인→0.51인)	19,324	16,285	△3,039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오류
○○○○ 주변사면 응급복구 공사	사면보호공 설치 단가산출서 조정 (지세할증 25%제외)	19,360	16,350	△3,010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오류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4. 건설공사 준공검사자 변경 처리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공사감독자나 준공검사자가 인사발령 및 교육 등으로 공사감독 및 계약 이행사항 검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부서인 ○○○○과에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 사면 점검로 추가 설치공사가 2018. 9. 7.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공무원이 6주 동안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도 계약부서인 ○○○○과에 준공검사자 변경 요청을 하지 않고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까지 임의로 처리하여 준공검사자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4】 ○○○○ 점검로 추가 설치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자 임명 현황**

구분	직급	성명	임명일자	비고
감독공무원	지방○○○○○	○○○	2018. 8. 21.	
준공검사 공무원	지방○○○○○	○○○	2018. 8. 21.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2018.9.2.~10.12.) 전북 완주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5. 시공 자격 없는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 기준(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레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 실레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 주변사면 응급복구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인 ○○○○(주)로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sup>1)</sup>만 제출 받고, 시공자격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표 5】**와 같이 시공자격이 없는 ○○○○(주)과 2018. 8. 14. 계약금액 19,360천 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5】 ○○○○ 주변사면 응급복구 공사 수의계약 현황**

사업량	계약금액 (천 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시공자격 (사천시 제한한 자격요건)	계약상대자 (○○○○)	계약방법
. 사면 보호공 - 비닐덮기 1,693m <sup>2</sup> - PE그물망 설치 1,693m <sup>2</sup>	19,360	'18.8.14. ~ 8.28.	○○○○ (주)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 관리업 미등록 업체	1인견적 수의계약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1) ○○○○(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와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재해 상황에서 긴급함과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규 숙지와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를 위해 시기적으로 공사량을 분할하고 과다 설계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공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과 지방○○○○○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또한 공사량 분할 1인 수의계약, 과다설계, 부적격자와 계약체결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2019년 ○○○ 및 ○○○ ○○○○ 안전점검용역 계약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소규모공공시설법”）」 에 따라 저수지와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해 【표 1-1】 과 같이 매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표 1-2】 와 같이 안전점검을 용역으로 시행하였다.

【표 1-1】 ○○○ 및 ○○○ ○○○○ 안전점검 현황(년도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점검대상	- 저수지 86개소 - 소규모공공시설136개소	- 저수지 86개소 - 소규모공공시설136개소	- 저수지 86개소 - 소규모공공시설204개소	- 저수지 86개소 - 소규모공공시설204개소
점검방법	○○과 및 읍면동 자체점검	용역시행	○○과 자체점검	○○과 자체점검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표 1-2】 2019년 안전점검용역 계약 현황

용역명	과업량	기초금액 (천 원)	계약금액 (천 원)	계약일	용역기간	용역사	계약방법	관련법
계		39,600	36,036					
○○○ 안전점검	저수지 ○○개소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19,700	17,927	'19.3.12	'19.3.14. ~ 5.12.	(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
○○○ ○○○○ 안전점검	소규모 공공시설 ○○○개소 (세천 ○○○, 낙차공 ○)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19,900	18,109	'19.4.2	'19.4.3. ~6.1.	(주)○○		-소규모공공시설법 제5조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2. 안전점검 용역비 부적정 산정으로 1인 수의계약 체결

### ①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부적정 산정으로 1인 수의계약 체결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sup>1)</sup>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이하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및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이하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점검 및 진단 대가는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로 작성이 되며, 대가는 정액적상방식(점검 및 진단의 실시예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라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예산 사정, 계약방법 등을 이유로 과업과 관련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부당하게 과소계산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9년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라 55백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본 용역 과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sup>2)</sup>”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19,700천 원으로 과소 산정하여 ○○과에 계약을 요청하였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방조제 등

2)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용역대가 산정기준 요율

이에 따라 ○○과에서는 ○○과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용역설계내역서) 내용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를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했다면 【표 2】와 같이 기초금액이 55백만 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안전점검 용역을 적합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과소 용역비를 산정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함으로써 선의의 타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였다.

**【표 2】 안전진단 대가기준 적용 용역비 재산정**

구 분	당 초			재 산 정			비 고
	용역대가 산출기준	용역내역서	기초금액 (천 원)	용역대가 산출기준	용역내역서	기초금액 (천 원)	
2019년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 (농림축산식품부)	1. 조사측량비 2. 실시설계비 3. 도서작성 등 4. 손해배상보험료 5. 부가가치세 6. 총용역비	19,700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농림축산식품부)	1. 기본대가 1)직접인건비 2)제경비 3)기술료 4)직접경비 2. 손해배상보험료 3. 부가가치세 4. 총용역비	55,000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부적정 산정으로 1인 수의계약 체결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규모공공시설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sup>3)</sup>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위탁 수행할 경우에 대가 산정기준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표준대가기준(이하 “표준대가기준”）」에 따라야 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3) 소규모 공공시설 : 「○○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기술료로 산출되며 직접인건비는 「방재분야 표준품셈」 풍수해분야의 소요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규모, 난이도, 소규모 공공시설 개소수, 지역적 특성 등의 보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표준대가기준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예산 사정, 계약방법 등을 이유로 과업과 관련 없는 기준 적용하여 용역비를 부당하게 과소계산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표준대가기준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를 60백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본 용역 과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농어촌 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9,900천 원으로 과소 산정하여 ○○과에 계약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과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용역설계내역서) 내용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를 표준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했다면 【표 3】과 같이 기초금액이 60백만 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해야하는 안전점검 용역을 적합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과소 용역비를 산정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함으로써 선의의 타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였다.

**【표 3】 표준대가기준 적용 용역비 재산정**

구 분	당 초			재 산 정			비 고
	용역대가 산출기준	용역내역서	기초금액 (천 원)	용역대가 산출기준	용역내역서	기초금액 (천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 (농림축산식품부)	1. 조사측량비 2. 실시설계비 3. 도서작성 등 4. 손해배상보험료 5. 부가가치세 6. 총용역비	19,90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표준대가기준 (행정안전부)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료 5. 부가가치세 6. 총용역비	60,000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3.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수행 부적격자와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르면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시에 「농어촌정비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나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시행하게 하여야 하고 수행자격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과에서 계약 요청한 2019년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위탁 가능한 용역수행 자격요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와 2019. 3. 12. 계약금액 17,927천 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4. 저수지 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업무 추진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2절 1.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계약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본 용역 과업에 부합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인 저수지 안전점검 매뉴얼에 있는 저수지 안전점검 및 평가방법, 성과품 목록 등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로 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를 I.과업일반사항 및 II.과업특별사항으로 작성하였는데, II.과업특별사항의 내용은 과업의 목적인 저수지 안전점검 및 대장작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관련 사항으로 작성되어 있고 본 용역 저수지 안전점검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저수지 안전점검 및 평가방법, 성과품 목록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저수지 ○○개소의 안전점검 평가표의 시설상태에 대해 점검결과 누락되었고 저수지 점검(결합)사진 미제출 되는 등 저수지 안전점검 과 대장작성이라는 본 과업의 성과품이 부실하게 제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

□ 안전점검 평가표(2019년)									
배 냥 골 저 수 지 안전점검 평가표(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가	등급	평가	등급	평가	등급	평가	등급
합 계		48	D						
○제 방 수		26	D						
- 누 수		8							
- 댐 마 무		4							
- 상류사면		6							
- 하류사면		8							
○여 수 로		16	C						
- 물 넘 이		6							
- 방수로(측수로)		6							
- 감세공(정수로)		4							
○취 수 시 설		6	C						
- 사 통(취수탑)		3							
- 복 통		3							

※ 부제법(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매점에 대해 권장여건을 감안 20% 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 시설상태 누락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와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법과 규정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안전점검 용역대가를 잘못 산정하고 과업수행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법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표준 대가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용역비를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고 과업지시서 부실하게 작성하여 용역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현 ○○○○○과), 실무책임자 ○○과 지방○○○○○○○○(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또한 저수지 및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하고 부실한 과업지시,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공급확대 지원사업 사업처리 지연 및 정산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를 조기에 공급하여 공급 취약 지역주민 수혜 불균형 해소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표 1】과 같이 ○○○○ 공급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급확대 지원사업 현황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백만 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8,658	633	1,975	6,050
2017	○○○○ 공급확대 지원사업	(주)○○○○	2,624	103	500	2,021
2018			2,343	215	475	1,653
2019			2,015	215	500	1,300
2020			1,676	100	500	1,076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 2. 사전 승인 없이 사업처리 지연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 승인 받은 후 보조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주)○○○가 【표 2】와 같이 2019년과 2020년 보조사업이 편입부지 사용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계획서의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에 시장에게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사업계획서(사업기간) 변경승인, 보조금 이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 공급확대 지원사업 미완료 사유**

연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내용	보조사업비(백만 원)				사업기간	사업기간내 미완료 사유	완료일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3,691	315	1,000	2,376			
2019	(주) ○○○○	○○○○ 공급 배관 설치 L=5,762m	2,015	215	500	1,300	2019.5.1. ~ 12.31.	편입부지(26세대) 지적 불부합으로 협의 지연	'21.3월
2020		○○○○ 공급 배관 설치 L=4,544m	1,676	100	500	1,076	2020.7.1. ~ 12.31.	절대공기 부족	'21.4월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3.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이행 및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 수행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보조사업이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내 미 완료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 또는 보조금 이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주)○○○○가 사업기간이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인 2019년도 보조사업과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인 2020년 보조사업을 회계연도내 완료하지 않고, 감사 종료일 2021. 5. 24.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보조금 이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 4. 2017년, 2018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검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지방보

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검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에 따라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8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및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 공급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성 또는 준공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확정된 후 정산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 (주)○○○○가 【표 3】과 같이 2017년과 2018년 실적보고서에 안전관리비에서 집행 불가능한 공사안내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구입한 내역으로 제출하였고, 증빙서류인 사진대장 확인 결과 2017년 및 2018년 안전용품을 1회 구입하여 나머지 3개 지구 사진으로 중복 제출하였는데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 〇,〇〇〇천 원을 과다 지급하여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설계 반영 금액	목적 외 사용 금액					위반사항 (사용불가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도비	군비		
계			67,831	37,348	9,696	2,372	7,324	27,652	
2017	○○○○ 공급확대 지원사업	(주) ○○○○	35,846	20,081	4,619	783	3,836	15,462	- 현수막 제작 - 교통안전시설물 구입
2018			31,985	17,267	5,077	1,589	3,488	12,190	- 공사 안내표지판 구입 - 안전용품 사진 중복 제출

출처) 사천시 감사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규 업무연찬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 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천시 단독주택 등 ○○○○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도 이행하지 않아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 (주)○○○○에게 과다 지급된  
보조금 〇,〇〇〇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7년 1. 1.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 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대, 천 원)

해당과	년도	등록수	과태료		근거
			건수	금액	
○○과	계		279	24,294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 안전기준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2017	1,457	42	2,324	
	2018	1,508	59	6,080	
	2019	1,555	70	6,590	
	2020	1,602	88	6,330	
	2021	1,588	20	2,97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서는 정기검사신청기간<sup>1)</sup> 만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 마다 1만 원을 가산하여 최고 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sup>2)</sup>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천시 ○○과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최소 2만 원부터 최고 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7. 1. 1.부터 2021.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 지연자에 대해서만 259건 21,32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전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 5. 24. 감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부과 현황을 파악한 결과 **【표 2】**와 같이 총 73건의 검사 미필자에게 과태료 73건 총 29,200천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부과제척기간 경과하지 않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 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 2021. 5. 24.기준)

연도별	건 수	금 액	연도별	건 수	금 액
<b>계</b>	<b>73</b>	<b>29,200</b>	2018년	17	6,800
2016년	12	4,800	2019년	18	7,200
2017년	12	4,800	2020년	14	5,60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현황 **【별표1】** 따로 붙임

1)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

2)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의 종료일이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서 그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8.12. 법무부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836-14)

또한 2012. 1. 1.부터 2021. 5. 24.까지 자료 확인이 가능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게 부과 할 수 없는 과태료 미 부과현황은 【표 3】과 같이 55건에 21,200천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 부과현황**  
(단위 : 천 원 / 2021. 5. 24.기준)

연도별	건 수	금 액	연도별	건 수	금 액
<b>계</b>	<b>55</b>	<b>21,200</b>	2014년	15	6,000
2012년	7	2,100	2015년	8	3,200
2013년	20	7,900	2016년	5	2,00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현황 【별표2】 별첨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업무 연찬 부족 및 담당자 변경 시 업무인수인계 착오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기계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과(행위시 ○○○○과) 지방○○○○○ ○○○(현 ○○○동),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과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과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제6호 등에 따라 2016년 이후 부과하지 않은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73건 29,200천 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부과제척기간 경과하지 않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 부과 세부현황**

(단위 : 천 원 / 2021. 5. 24.기준)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신청만기일	경과일수	과태료 추징액
계	73건						29,200
1			지게차	2016.04.25	2016.05.26	1,824	400
2			지게차	2016.05.14	2016.06.14	1,805	400
3			굴착기	2016.05.24	2016.06.24	1,795	400
4			지게차	2016.06.19	2016.07.20	1,769	400
5			굴착기	2016.08.13	2016.09.13	1,714	400
6			굴착기	2016.08.20	2016.09.20	1,707	400
7			굴착기	2016.09.17	2016.10.18	1,679	400
8			공기압축기	2016.10.14	2016.11.14	1,652	400
9			지게차	2016.10.16	2016.11.16	1,650	400
10			지게차	2016.11.22	2016.12.23	1,613	400
11			지게차	2016.11.25	2016.12.26	1,610	400
12			덤프트럭	2016.11.25	2016.12.26	1,610	400
13			지게차	2016.12.06	2017.01.06	1,599	400
14			지게차	2016.12.09	2017.01.09	1,596	400
15			지게차	2017.02.09	2017.03.12	1,534	400
16			지게차	2017.03.13	2017.04.13	1,502	400
17			준설선	2017.03.26	2017.04.26	1,489	400
18			덤프트럭	2017.04.02	2017.05.03	1,482	400
19			로더	2017.05.12	2017.06.12	1,442	400
20			지게차	2017.06.11	2017.07.12	1,412	400
21			로더	2017.08.01	2017.09.01	1,361	400
22			지게차	2017.10.06	2017.11.06	1,295	400
23			굴착기	2017.10.28	2017.11.28	1,273	400
24			굴착기	2017.11.23	2017.12.24	1,247	400
25			지게차	2017.12.01	2018.01.01	1,239	400
26			롤러	2017.12.27	2018.01.27	1,213	400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신청만기일	경과일수	과태료 추징액
27			기중기	2018.01.10	2018.02.10	1,199	400
28			로더	2018.02.02	2018.03.05	1,176	400
29			지게차	2018.02.05	2018.03.08	1,173	400
30			지게차	2018.03.23	2018.04.23	1,127	400
31			덤프트럭	2018.03.26	2018.04.26	1,124	400
32			덤프트럭	2018.04.06	2018.05.07	1,113	400
33			굴착기	2018.05.17	2018.06.17	1,072	400
34			지게차	2018.06.09	2018.07.10	1,049	400
35			덤프트럭	2018.07.03	2018.08.03	1,025	400
36			지게차	2018.08.02	2018.09.02	995	400
37			덤프트럭	2018.08.12	2018.09.12	985	400
38			지게차	2018.09.07	2018.10.08	959	400
39			지게차	2018.09.18	2018.10.19	948	400
40			지게차	2018.10.04	2018.11.04	932	400
41			지게차	2018.10.30	2018.11.30	906	400
42			덤프트럭	2018.12.04	2019.01.04	871	400
43			굴착기	2019.01.29	2019.03.01	815	400
44			지게차	2019.03.04	2019.04.04	781	400
45			굴착기	2019.03.12	2019.04.12	773	400
46			덤프트럭	2019.03.15	2019.04.15	770	400
47			굴착기	2019.04.13	2019.05.14	741	400
48			굴착기	2019.04.15	2019.05.16	739	400
49			굴착기	2019.04.22	2019.05.23	732	400
50			굴착기	2019.04.22	2019.05.23	732	400
51			굴착기	2019.05.06	2019.06.06	718	400
52			지게차	2019.06.28	2019.07.29	665	400
53			굴착기	2019.07.22	2019.08.22	641	400
54			지게차	2019.08.11	2019.09.11	621	400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신청만기일	경과일수	과태료 추징액
55			덤프트럭	2019.09.04	2019.10.05	597	400
56			굴착기	2019.09.04	2019.10.05	597	400
57			지게차	2019.09.08	2019.10.09	593	400
58			굴착기	2019.10.25	2019.11.25	546	400
59			굴착기	2019.11.20	2019.12.21	520	400
60			굴착기	2019.12.28	2020.01.28	482	400
61			지게차	2020.01.19	2020.02.19	460	400
62			덤프트럭	2020.02.22	2020.03.24	426	400
63			굴착기	2020.03.07	2020.04.07	412	400
64			굴착기	2020.03.21	2020.04.21	398	400
65			굴착기	2020.03.29	2020.04.29	390	400
66			지게차	2020.04.11	2020.05.12	377	400
67			덤프트럭	2020.04.18	2020.05.19	370	400
68			콘크리트 믹서트럭	2020.05.17	2020.06.17	341	400
69			지게차	2020.06.14	2020.07.15	313	400
70			덤프트럭	2020.08.06	2020.09.06	260	400
71			모터 그레이더	2020.10.16	2020.11.16	189	400
72			지게차	2020.11.06	2020.12.07	168	400
73			지게차	2020.11.13	2020.12.14	161	40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 부과 세부현황**

(단위 : 천 원 / 2021. 5. 24.기준)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신청만기일	경과일수	과태료 추징액
계	55건						21,200
1			굴착기	2012.06.29	2012.07.30	3,220	300
2			로더	2012.07.18	2012.08.18	3,201	300
3			지게차	2012.08.01	2012.09.01	3,187	300
4			지게차	2012.08.12	2012.09.12	3,176	300
5			지게차	2012.08.31	2012.10.01	3,157	300
6			굴착기	2012.10.26	2012.11.26	3,101	300
7			덤프트럭	2012.10.29	2012.11.29	3,098	300
8			굴착기	2012.12.11	2013.01.11	3,055	300
9			덤프트럭	2013.02.20	2013.03.23	2,984	400
10			덤프트럭	2013.02.27	2013.03.30	2,977	400
11			굴착기	2013.03.08	2013.04.08	2,968	400
12			굴착기	2013.04.14	2013.05.15	2,931	400
13			굴착기	2013.04.22	2013.05.23	2,923	400
14			지게차	2013.05.25	2013.06.25	2,890	400
15			지게차	2013.06.02	2013.07.03	2,882	400
16			지게차	2013.06.14	2013.07.15	2,870	400
17			덤프트럭	2013.07.02	2013.08.02	2,852	400
18			굴착기	2013.07.15	2013.08.15	2,839	400
19			굴착기	2013.07.26	2013.08.26	2,828	400
20			굴착기	2013.07.29	2013.08.29	2,825	400
21			굴착기	2013.08.06	2013.09.06	2,817	400
22			굴착기	2013.08.20	2013.09.20	2,803	400
23			지게차	2013.09.04	2013.10.05	2,788	400
24			굴착기	2013.09.10	2013.10.11	2,782	400
25			지게차	2013.09.23	2013.10.24	2,769	400
26			지게차	2013.09.29	2013.10.30	2,763	400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신청만기일	경과일수	과태료 추징액
27			굴착기	2013.10.01	2013.11.01	2,761	400
28			지게차	2013.12.21	2014.01.21	2,680	400
29			지게차	2013.12.30	2014.01.30	2,671	400
30			지게차	2014.01.08	2014.02.08	2,662	400
31			지게차	2014.03.09	2014.04.09	2,602	400
32			항타 및 항발기	2014.03.30	2014.04.30	2,581	400
33			굴착기	2014.05.27	2014.06.27	2,523	400
34			굴착기	2014.05.28	2014.06.28	2,522	400
35			지게차	2014.06.15	2014.07.16	2,504	400
36			지게차	2014.06.18	2014.07.19	2,501	400
37			지게차	2014.07.07	2014.08.07	2,482	400
38			지게차	2014.07.14	2014.08.14	2,475	400
39			지게차	2014.09.07	2014.10.08	2,420	400
40			지게차	2014.09.12	2014.10.13	2,415	400
41			지게차	2014.10.04	2014.11.04	2,393	400
42			지게차	2014.10.12	2014.11.12	2,385	400
43			지게차	2014.12.09	2015.01.09	2,327	400
44			지게차	2015.02.06	2015.03.09	2,268	400
45			굴착기	2015.03.02	2015.04.02	2,244	400
46			굴착기	2015.04.03	2015.05.04	2,212	400
47			지게차	2015.04.25	2015.05.26	2,190	400
48			굴착기	2015.05.08	2015.06.08	2,177	400
49			굴착기	2015.06.01	2015.07.02	2,153	400
50			굴착기	2015.10.05	2015.11.05	2,027	400
51			굴착기	2015.12.28	2016.01.28	1,943	400
52			덤프트럭	2015.12.31	2016.01.31	1,940	400
53			지게차	2016.01.25	2016.02.25	1,915	400
54			지게차	2016.01.27	2016.02.27	1,913	400
55			지게차	2016.03.15	2016.04.15	1,865	40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경고 및 훈계·주의 요구

제 목 포상금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표 1】과 같이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1】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예산과목	비고
합 계	2,008,360	1,384,436	포상금 (301-01)	
2017	422,860	348,933		
2018	470,800	392,030		
2019	470,700	375,383		
2020	342,300	248,120		
2021	301,700	19,97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포상금 예산 편성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 11. 포상금 비목(303-01)에 따르면 포상금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나 직원의 생일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포상금 비목으로 예산을 계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은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에서는 2017년부터 【표 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5년간 총 11억 7,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회계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총 8억 4,360만 원을 집행하여 포상금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포상금 예산 편성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예산부기명	예산액	집행액	편성과목	적정과목
<b>합 계</b>		<b>1,174,830</b>	<b>843,607</b>		
2017	<b>소 계</b>	<b>248,360</b>	<b>214,647</b>		
	퇴직공무원 기념품	16,500	24,387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생일 축하상품권	33,570	33,57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자녀 출산축하금	13,000	5,7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테마견학	109,200	78,600	포상금	여비
	직원체력단련의 날	20,000	18,3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56,090	54,090	포상금	업무추진비
2018	<b>소 계</b>	<b>261,200</b>	<b>224,910</b>		
	퇴직공무원 기념품	35,000	32,13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생일 축하상품권	34,000	34,0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자녀 출산축하금	13,000	3,6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테마견학	109,200	87,600	포상금	여비
	직원체력단련의 날	20,000	18,58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50,000	49,000	포상금	업무추진비
2019	<b>소 계</b>	<b>277,200</b>	<b>230,790</b>		
	퇴직공무원 기념품	35,000	26,61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생일 축하상품권	34,000	36,0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자녀 출산축하금	13,000	3,9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테마견학	109,200	81,840	포상금	여비
	직원체력단련의 날	20,000	18,34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66,000	64,100	포상금	업무추진비
2020	<b>소 계</b>	<b>225,070</b>	<b>159,390</b>		
	퇴직공무원 기념품	35,000	26,13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생일 축하상품권	34,570	51,64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자녀 출산축하금	25,500	22,7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테마견학	60,000	19,920	포상금	여비
	직원체력단련의 날	20,000	-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50,000	39,000	포상금	업무추진비
2021	<b>소 계</b>	<b>163,000</b>	<b>13,870</b>		
	퇴직공무원 기념품	40,000	67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자녀 출산축하금	20,000	3,2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	33,000	10,000	포상금	업무추진비
	직원 테마견학	40,000	-	포상금	여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0,000	-	포상금	업무추진비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포상금 예산 집행 부적정

#### 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지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천시 포상조례」 제2조,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르면 포상은 사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사천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아닌 퇴직공무원 격려품 지급은 예산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사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공적에 의한 포상으로 볼 수 없는 퇴직공무원 전원에게 【표 3】과 같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1명, 109,927천 원을 포상금 예산으로 공로패(15만 원 상당), 순금행운의 열쇠(50만 원 상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3】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지급내용			집행액	비고
	품목	세부내용	지급대상		
<b>합 계</b>			<b>161명</b>	<b>109,927</b>	
2017년	<b>소 계</b>			<b>24,387</b>	
	순금행운의 열쇠	퇴직공무원 기념품	○○○	500	
	순금행운의 열쇠	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20명	10,500	
	공로패	2017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 외 20명	3,507	
	공로패	상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추가	○○○	120	
	순금행운의 열쇠	퇴직공무원 기념품 추가	○○○	500	
	꽃다발	2017년 상반기 퇴임식 꽃다발	○○○ 외 15명	980	
	꽃다발	명예퇴직자 지급용 꽃다발	○○○ 외 2명	300	
	공로패	2017년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 외 2명	450	
	순금행운의 열쇠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2명	1,500	
	공로패	2017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 외 8명	1,530	
	순금행운의 열쇠	2017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8명	4,500	
2018년	<b>소 계</b>			<b>32,130</b>	
	순금행운의 열쇠	퇴직공무원 기념품	○○○	500	
	순금행운의 열쇠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	500	
	공로패	2018년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	150	
	순금행운의 열쇠	2018년 상반기 퇴임공무원 기념품	○○○ 외 16명	8,500	
	공로패	2018년 상반기 퇴임공무원 공로패	○○○ 외 16명	2,890	
	꽃다발	2018년 상반기 퇴임 꽃다발	○○○ 외 16명	850	
	순금행운의 열쇠	퇴직 공무원 기념품	○○○	500	
	공로패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	150	
	공로패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 외 26명	4,590	
순금행운의 열쇠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26명	13,500		
2019년	<b>소 계</b>			<b>26,610</b>	
	공로패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 외 1명	340	
	순금행운의 열쇠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1명	1,000	
	순금행운의 열쇠	2019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21명	11,000	
	공로패	2019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 외 12명	2,210	
	순금행운의 열쇠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	500	
	공로패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	170	
	공로패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 외 1명	340	
	순금행운의 열쇠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 외 1명	1,000	
	공로패	2019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 외 14명	2,550	
순금행운의 열쇠	2019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14명	7,500		
2020년	<b>소 계</b>			<b>26,130</b>	
	공로패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 외 22명	3,910	
	순금행운의 열쇠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22명	11,500	
	공로패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 외 2명	340	
	순금행운의 열쇠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2명	1,000	
	공로패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공로패	○○○ 외 13명	2,380	
순금행운의 열쇠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품	○○○ 외 13명	7,000		
2021년	<b>소 계</b>			<b>670</b>	
	순금행운의 열쇠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	500	
	공로패	명예퇴직공무원 공로패	○○○	17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퇴직기념품(50만 원), 공로패(15~20만 원), 꽃다발(5~10만 원)

② 직원 격려(생일축하, 자녀출산축하, 자녀입학축하) 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직원의 생일, 자녀출산 축하금, 자녀입학 축하금 총 204,280천 원을 【표 4】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아닌 포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3만 원 상당의 생일축하 상품권을 구입·배부하고, 출산공무원에 대한 축하금(첫째 300천 원, 둘째 500천 원, 셋째이상 1,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2021년부터는 자녀 입학 축하금(100천 원)까지 집행하여 포상금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였다.

【표 4】 직원 격려 관련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지급내용			예산액	집행액
	예산과목	세부내용	지급대상		
합 계		9건		253,070	204,280
2017	포상금	직원 기념일(생일) 축하 상품권	○○○ 외 1121명	33,570	33,570
2018	포상금	직원 기념일(생일) 축하 온누리상품권	○○○ 외 1132명	34,000	34,000
2019	포상금	직원 기념일(생일) 축하 온누리상품권	○○○ 외 1199명	34,000	36,000
2020	포상금	직원 기념일(생일) 축하 온누리상품권	○○○ 외 1185명	34,000	51,610
2017	포상금	직원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외 33명	13,000	5,700
2018	포상금	직원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외 18명	13,000	3,600
2019	포상금	직원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외 19명	13,000	3,900
2020	포상금	직원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외 63명	25,500	22,700
2021	포상금	직원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외 9명	20,000	3,200
2021	포상금	다자녀직원 자녀입학 축하금	○○○ 외 47명	33,000	10,00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생일 상품권(1인당 3만 원), 출산축하금(2020년 기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100만 원), 입학축하금(1인당 10만 원)

### ③ 직원 테마견학 경비 지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는 포상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포상금 비목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를 집행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포상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모범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견학 경비는 포상금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모범공무원도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상금으로 직원 테마견학 경비를 4년간 총 2억 6,7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실비에 대한 정산도 없이 일괄적으로 1인당 12만 원(2020년에는 1인당 6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5】 직원 테마견학 관련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지급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예산과목	세부내용	지급대상			
합 계		4건		387,600	267,960	
2017	포상금	직원테마견학 경비	○○○팀 외 159팀	109,200	78,600	1인 12만 원
2018	포상금	직원테마견학 경비	○○○팀 외 277팀	109,200	87,600	"
2019	포상금	직원테마견학 경비	○○○팀 외 178팀	109,200	81,840	"
2020	포상금	직원테마견학 경비	○○○팀 외 92팀	60,000	19,920	1인 6만 원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④ 직원 체력단련의 날 지원금 및 직장동호회 활동 격려금 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표 6-1】과 같이 직원 체력단련행사 추진 명목으로 총 5,522만 원(직원 1인당 2만 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표 6-2】와 같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를 포상금으로 총 2억 619만 원(동호회 당 900천 원~2,20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6-1】 직장 체력단련행사 격려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지급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예산과목	세부내용	지급대상			
합 계				80,000	55,220	
2017	포상금	직원 체력단련행사 지원금	전직원	20,000	18,300	1인 2만 원
2018	포상금	직원 체력단련행사 지원금	전직원	20,000	18,580	"
2019	포상금	직원 체력단련행사 지원금	전직원	20,000	18,340	"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6-2】 직장동호회 격려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지급내용			예산액	집행액
	예산과목	세부내용	지급대상		
합 계				252,090	206,190
2017	포상금	직장동호회 격려금	○○대회 외 15건	56,090	54,090
2018	포상금	직장동호회 격려금	○○대회 외 14건	50,000	49,000
2019	포상금	직장동호회 격려금	○○대회 외 10건	66,000	64,100
2020	포상금	직장동호회 격려금	○○대회 외 12건	50,000	39,00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020년기준 동호회당 약 90만 원 ~ 220만 원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사천시 ○○○○○○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7,000여 사업의 항목을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2명)이 검토하여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편성했던 예산으로 과목의 적합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초예산의 편성은 전년도에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9월)하면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 제출(11월)하기까지 2개월이라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음에도 세심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기초하여 제정된 조례로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천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포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조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포상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②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포상금 예산편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실 지방○○○○○○(현 ○○○○○○○○실), ○○○○○○○○실 지방○○○○○○○○(현 ○○○○○동), ○○○○○○○○실 지방○○○○○○○○○○(현 ○○○○○과)

과 실무책임자 ○○○○○○○실 지방○○○○○ ○○○(현 ○○○○○○○  
실), ○○○○○○○실 지방○○○○○ ○○○(현 ○○○), ○○○○○○○실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 ○○○ 및 사천시장배 ○○○○대회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 ○○○ 및 사천시장배 ○○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 ○○○ 및 사천시장배 ○○대회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예산액			정산액			대회일	정산일
		계	시비	자부담	계	균비	자부담		
2017	○○○○○협회	20,000	10,000	10,000	19,422	10,000	9,422	2017.05.28.	2018.02.27.
2018	○○○○○협회	11,000	10,000	1,000	11,400	10,000	1,400	2018.05.27. 2018.11.24.	2019.05.31.
2019	○○○○○연맹	11,000	10,000	1,000	9,993	9,993	0	2019.11.09.	2020.06.04.
2020	○○○○○연맹	10,000	10,000					미개최	
2021	○○○○○연맹	10,000	10,000					미도래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보조사업 변경승인 검토 소홀로 현금 무단인출 초래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계획변경을 요청한 때에 경비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8년도 보조사업 추진 시 당초 1회로 개최 예정인 ‘○○○ ○○○ 및 사천시장배 ○○대회’를 2018. 5. 27. ‘○○○’와, 2018. 11. 24. ‘○○대회’로 각각 나누어 개최한다는 보조사업자(사천시 ○○협회)의 계획변경 요청에 대해 경비 집행계획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변경을 승인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절반인 현금 500만 원을 ○○대회를 개최 명목으로 2018. 5. 9. 무단으로 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1】 보조사업 변경승인 현황**

승인통보일	당초	변경	비고
2018.5.21	제40회 ○○○○○○ 및 제10회 사천시장배 ○○대회를 5월중 동시개최	제40회 ○○○○○○는 5월중, 제10회 사천시장배 ○○대회는 10월중 개최	경비집행계획 미검토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무단으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2018. 11. 24. 개최한 ○○대회 완료 후 한 달이 지난 2018. 12. 26. 보조금 계좌로 입금하여 사후 (2018. 12. 26.~28.)에 집행하였으며, 심지어 당해 회계연도를 넘어 2019. 5. 3. 행사장 전기공사비로 390,1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관련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천시 ○○○○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 하였다.

**【표 2-2】 2018년 보조금 무단인출 및 사후집행 내역**

(단위: 천 원)

전용계좌		지출내역					부적정 현황
인출일자	인출액	내용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방법	
18.05.09.	5,000,000	제10회 ○○대회 집행 예산 인출					무단인출
18.12.26	5,000,000 (입금액)	제10회 ○○대회 집행 예산 입금					재입금
18.12.26.	1,036,500	기념품 구입	12.26.	1,036,500	○○○○○○	계좌입금	사후집행
18.12.26.	360,000	상장·상패 제작	12.26.	360,000	○○○○○	계좌입금	사후집행
18.12.26.	1,744,400	소모품 구입	12.26.	1,744,400	○○○○	계좌입금	사후집행
18.12.28.	1,625,000	홍보물 제작	12.28.	1,625,000	○○○/○○○	계좌입금	사후집행
19.05.03.	390,100	○○○ 행사장 전기공사	19.05.03.	400,000	○○○○○	계좌입금	회계연도 무단이월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보조금 집행 기준 미준수 방치 및 정산검사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교부결정의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재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 ○○○ 및 사천시장배 ○○○○대회’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매년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산검사가 4개월에서 7개월정도 지연처리 되었다.

**【표 3】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현황**

연도	사업완료일	실적보고서 제출일	정산검사일	비고
2017년	2017. 05. 28	2018. 02. 03	2018. 02. 07	7개월 지연
2018년	2018. 11. 24	2019. 05. 27	2019. 05. 31	4개월 지연
2019년	2019. 11. 09	2020. 06. 04	2020. 06. 04	5개월 지연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표 4-1】과 같이 2017년 11건, 2018년 11건, 2019년 2건을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표 4-2】와 같이 2017년 2건, 2019년 4건을 현금으로 사용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증빙서류만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3년간 이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1】 세금계산서 미발행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도	전용계좌		지출내역				비고	
	인출일자	인출액	내용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방법
2017	소계			11건	5,085,000			
	05.23	200,000	사무기기 대여	05.23.	200,000		계좌입금	보조금
	05.23	223,000	조끼 제작	05.23	223,000		계좌입금	보조금
	05.25.	122,000	조끼 나염	05.25.	122,000		계좌입금	보조금
	06.01.	400,000	리플릿 제작	06.01.	400,000		계좌입금	보조금
	06.01.	250,000	경품추첨권 제작	06.01.	250,000		계좌입금	보조금
	06.08.	1,433,000	식재료 구입	06.08.	1,433,000		계좌입금	자부담
	06.08.	1,530,000	식재료 구입	06.08.	1530,000		계좌입금	자부담
	06.08.	164,000	행사장 바닥 설치	06.08.	164,000		계좌입금	자부담
	06.08.	112,000	떡 구입	06.08.	112,000		계좌입금	자부담
	06.08.	491,000	제수과일 구입	06.08.	491,000		계좌입금	자부담
	06.08.	360,000	다과 구입	06.08.	360,000		계좌입금	자부담
2018	소계			11건	10,599,900			
	05.10.	1,000,000	현수막 제작	05.10.	1,000,000		계좌입금	보조금
	06.18.	1,870,000	기념품 구입	06.18	1,870,000		계좌입금	보조금
	06.21.	500,000	공연비 지급	06.21.	500,000		계좌입금	보조금
	06.29.	1,474,000	천막 대여	06.29.	1,474,000		계좌입금	보조금
	06.29.	500,000	행사 떡 구입	06.29.	500,000		계좌입금	자부담
	06.29.	900,000	차량 임차	06.29.	90,000		계좌입금	자부담
	12.26.	1,036,500	기념품 구입	12.26.	1,036,500		계좌입금	보조금
	12.26.	360,000	상장·상패 제작	12.26.	360,000		계좌입금	보조금
	12.26.	1,744,400	소모품 구입	12.26.	1,744,400		계좌입금	보조금
	12.28.	1,625,000	홍보물 제작	12.28.	1,625,000		계좌입금	보조금
	05.03.	390,100	○○○ 행사장 전기공사	19.05.03.	400,000		계좌입금	보조금
2019	소계			2건	2,513,210			
	11.08.	1,479,210	경품 및 소모품 구입	11.08.	1,479,210		계좌이체	보조금
	12.26.	1,034,000	시상품 구입	12.26.	1,034,000		계좌이체	보조금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4-2】 간이영수증 첨부 현금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도	전용계좌		지출내역				비고	
	인출일자	인출액	내용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방법
2017	소계			2건	5,000,000			
	-	-	점심 식대	06.08.	3,000,000		현금	자부담
	-	-	생수등 구입	06.08.	2,000,000		현금	자부담
2019	소계			4건	6,000,000			
	10.08	2,000,000	음향·무대 설치,가수 출연비	10.08.	2,000,000		현금	보조금
	10.10	2,000,000	셔틀버스 임차	10.10.	1,000,000		현금	보조금
			행사비품 렌탈	10.10.	1,000,000		현금	보조금
	11.07	2,000,000	행사 음식 구입	11.07.	2,000,000		현금	보조금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서류 분실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순 미비사항으로 판단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의견과 보조금 집행방법을 지도하고 정산방법을 재교육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두로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는 것과 정산방법을 재교육하였다고는 하나 2019년 보조사업 추진 시에도 총 600만 원(4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한 것으로 정산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었던 점을 보면 보조사업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지방재정법」,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집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현 ○○○○과)과 ○○○○과 지방○○○○○○○○(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표 1】과 같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 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의료급여사업 추진현황

(단위: 명, 천 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대상	예산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1,936,666	1,738,653	461,513	9,736,500	10,649,355	1,152,906	310,292	9,186,157
2017	중위소득 40%이하 인 가구	진찰검사·처치·수술료, 입원비 등	4,524	2,169,398	316,357	105,439	1,747,602	2,039,744	216,208	75,934	1,747,602
2018			4,447	2,165,827	415,313	103,828	1,646,686	1,996,274	279,670	69,918	1,646,686
2019			4,350	2,575,159	349,255	87,314	2,138,590	2,506,116	294,021	73,505	2,138,590
2020			4,343	2,412,404	328,123	82,031	2,002,250	2,307,759	244,407	61,102	2,002,250
2021			4,340	2,613,878	329,605	82,901	2,201,372	1,799,462	118,600	29,833	1,651,029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급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상실 통보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의료급여 종별이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등의 변경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연 통보 시 의료급여·건강보험 간 정산, 급여비용 착오 지급, 수급권 자격 확인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취득·변경·상실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종별변경 대상자에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7. 10.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73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최대 1,678일까지 처리 지연함으로써 469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진료가 이루어져, 46,953천 원<sup>1)</sup>의 급여비용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1)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부담한 46,953천 원은 건강보험재정과 상호정산 처리 하여 기 반환 완료되었음

**【표 2】 의료급여 자격상실 처리 지연에 따른 의료급여 부담 현황**

(단위: 명, 회, 천 원)

연 도	의료급여 수급권 지연 처리인원	의료급여 중지일 이후 진료 횟수	기관부담금액 (의료급여기금)	지연 일수
계	73	469	46,953	
2017. 10~	4	15	169	최대 48일 지연
2018년	20	53	816	최대 64일 지연
2019년	46	296	39,292	최대 1,678일 지연
2020년	3	105	6,676	최대 1,254일 지연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9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종별을 1종<sup>2)</sup>에서 2종<sup>3)</sup> 수급자로 변경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 ‘근로능력 없음’ 으로 판정된 12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2종에서 1종 수급권자로 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나 현재 까지 자격변경 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종별착오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 917천 원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3】 의료급여 종별변경 미처리 대상자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대상자			종별확인			지연일	환급 대상액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별	적정종별	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합계	21명							917
1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0. 8. 13.	284	17
2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0. 7. 22.	306	33
3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0. 9. 1.	265	
4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0. 7. 23.	305	50
5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1. 3. 4.	81	
6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1. 5. 3	21	
7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1. 2. 1.	112	
8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1. 1. 28.	116	730

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자, 65세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연번	대상자			종별확인			지연일	환급 대상액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별	적정종별	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9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1. 3. 19.	66	
10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1. 2. 22.	91	
11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0. 8. 3.	294	38
12			2종	1종	근로능력 없음	20. 10. 27.	209	49
13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0. 12. 17.	158	
14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0. 10. 30.	206	
15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1. 3. 16.	69	
16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1. 3. 4.	81	
17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1. 3. 8.	77	
18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1. 2. 23.	90	
19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1. 3. 1.	84	
20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1. 3. 1.	84	
21			1종	2종	근로능력 있음	21. 1. 11.	133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환급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한 경우<sup>4)</sup> 분기별로 해당 대상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정산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통보받아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변동 등 환급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환급예정 통지 및 환급신청을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안내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지급 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 유형별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환급금액을 결정한다.

4) 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상 착오(자격소급 취득)로 인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은 경우

한편 「의료급여법」 제31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날(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변동 등으로 본인부담금 환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환급신청을 반드시 안내 하여야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산정하여 환급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14회에 걸쳐 실제 자격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나 진료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단과 환급안내문을 【표 4】와 같이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표 5】와 같이 환급대상 615명 28,139천 원에 대해 환급 신청 및 환급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특히, 294명, 1,148건 8,777천 원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청구 소멸시효(급여를 받은 날로 부터 3년)가 완성되어 수급권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건강보험공단 정산진료비 안내 공문통보 현황**

연도별	공문통보일	공문번호	접수일(확인일)
2017	2017. 11. 2.	보험급여팀-3291	2017. 11. 6.
2018	2018. 2. 12.	보험급여팀-481	2018. 2. 14.
	2018. 4. 30.	보험급여팀-1272	2018. 5. 3.
	2018. 8. 6.	보험급여팀-2240	2018. 8. 9.
	2018. 11. 6.	보험급여팀-3445	2018. 11. 6.
2019	2019. 2. 8.	보험급여팀-411	2019. 2. 8.
	2019. 5. 9.	보험급여팀-1357	2019. 5. 9.
	2019. 8. 14.	보험급여팀-2321	2019. 8. 14.
	2019. 11. 14.	보험급여팀-3137	2019. 11. 18.
2020	2020. 2. 11.	보험급여팀-391	2020. 2. 13.
	2020. 5. 11.	보험급여팀-1065	2020. 5. 15.
	2020. 7. 29.	보험급여팀-1661	2020. 7. 31.
	2020. 11. 3.	보험급여팀-2347	2020. 11. 6.
2021	2021. 2. 9.	보험급여팀-297	2021. 2. 16.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정산진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신청 안내 및 환급내역

(단위: 건, 원)

연도별	환급대상			환급안내	환급신청	환급결과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b>계</b>	<b>615</b>	<b>3,120</b>	<b>28,139,865</b>	미실시	x	-	-
2017.10. ~ 12.	97	205	1,064,120	미실시	x	-	-
2018년	181	989	7,909,520	미실시	x	-	-
2019년	166	933	8,560,060	미실시	x	-	-
2020년	132	856	9,632,815	미실시	x	-	-
2021년	39	137	973,350	미실시	x	-	-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4.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속임수 및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 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sup>5)</sup>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납부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전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로 확인된 경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sup>6)</sup>된 건 등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제19조,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때는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하며(구상금), 납부하지 않을 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강제집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5) 독촉 → 압류 또는 교부청구 → 매각 및 청산

6)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진료비가 지급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제31조 및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만료 6개월 내 민법 제174조의 규정의 의하여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수급권자의 속임수 및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때 발생한 ‘구상금’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납부대상자가 미납부 시 채권보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이번 감사기간 중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미회수 채권현황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미회수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액 51건의 징수율은 32%에 불과하며(부과금액 236백만 원, 징수액 75백만 원, 잔액 160백만 원) 감사대상 기간 중 채권보전 조치(재산 조회, 압류 등)는 전혀 이행 하지 않아 20건, 11,193천 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6】 채권 보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소멸시효 경과 채권현황**

(단위: 건, 천 원)

구분	결정 연도	채무자	부과액	징수액	채권잔액	최종 채권 보전조치(일)	시효 경과월
합계		20건	12,199	1,006	11,193		
부당이득금	소계	18건	8,667	606	8,061		
	2009	○○○	689	406	283	독촉(14.11.7.)	19. 11.
	2012	○○○	3,543	200	3,343	독촉(14.11.17.)	19. 11.
	2012	○○○	1,300		1,300	독촉(14.11.17.)	19. 11.
	2012	○○○○○○○	644		644		17. 12.
	2013	○○○○○○○○○	12		12		18. 1.
	2013	○○○○○	13		13		18. 1.
	2014	○○○	2,213		2,213	독촉(14.9.4.)	19. 9.

구분	결정 연도	채무자	부과액	징수액	채권잔액	최종 채권 보전조치(일)	시효 경과월
	2014	○○○○○○○○○	85		85		19. 9.
	2014	○○○○	30		30		19. 7.
	2014	○○○○	7		7		19. 8.
	2014	○○○○○○○○○	22		22		19. 10.
	2014	○○○○	2		2		19. 11.
	2014	○○○○○○○	2		2		19. 12.
	2014	○○○○○○○○○	1		1		19. 12.
	2014	○○○○○○○	41		41		19. 12.
	2014	○○○○	12		12		19. 12.
	2014	○○○○	7		7		19. 12.
	2014	○○○○	44		44		19. 12.
구상금	소계	2건	3,532	400	3,132		
	2017	○○○	794	400	394		20. 6.
	2017	○○○	2,738		2,738		20. 6.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료급여 업무 관련 법규 이해가 부족하여 채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의료급여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시설 관리 업무 병행으로 담당자의 업무 숙지가 미흡하여 업무처리 전반사항이 부족했으며 의료급여업무 지침 및 관련 법규 연찬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의료급여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3,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및 본인부담금 환급,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업무전반을 소홀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 실무책임자 ○○○○○○○과 지방○○○○○○ ○○○(현 ○○○○○과장)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에 따라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앞으로 「의료급여법」 제16조, 제17조,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 본인부담금 환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 운영비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에 【표 1】과 같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상근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 운영비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연도	사업명	교부액	주요내용
	합계		652,124	
	소계		202,790	
일반 회계	2018	○○○○○ ○○○○○ 운영비 지원	64,000	인건비 1명(복지부장) ○○○○시설 운영비
	2019	○○○○○ ○○○○○ 운영비 지원	73,692	
	2020	○○○○○ ○○○○○ 운영비 지원	65,098	
	소계		449,334	
○○ ○○ 기금	2018	○○○ 운영비 보조금	143,624	○○○ 직책수당 등 인건비 3명(○○○,○○○,○○○○) ○○○○시설 운영비 ○○○ 분회장 직책수당
	2019	○○○ 운영비 보조금	147,500	
	2020	○○○ 운영비 보조금	158,21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지방보조금(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교부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의 법령과 목적에의 적합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에 따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소속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과금 등 시설운영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 ○○○○○에서 보조사업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하고,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8년 【표 2】와 같이 ○○○○○○○○○○○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고 ‘인건비’, ‘운영비’로 집행계획을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등 면밀한 검토 없이 교부하였고, 2회에 걸쳐 추경을 확보하여 자본사업비 성격인 ○○식당 방수도장 공사비 등 항목으로 9,00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 2】 ○○○○○ ○○○○○ 2018년 사업비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	산출기초	신청금액
	계	64,000		64,000
○○복지 운영	지회운영비	64,000	○○○○ 인건비	20,514
			운영비	43,486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에는 ○○○○○ 문화 유적지 탐방, 각종행사 참가비용 등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여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교부결정 및 교부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단체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성 경비에 총 32,273천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3】 ○○○○○ ○○○○○ 운영비로 행사성 경비 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집행내역	집행액	비고
계	13개 사업	32,273	
2018	7개 사업	17,198	
	경남도지사기 ○○○○○○○대회 참가비용	1,199	
	경남은행장기 ○○○○○○○대회 참가비용	811	
	경남도지사배 ○○○○○○○대회 참가비용	1,000	
	연합회 ○○의날 및 ○○체육대회 참가비용	1,900	
	경남농협본부장기 ○○○○○○○대회 참가비용	1,026	
	제○○회 ○○○○ 기념식 참가비용	4,237	
	○○○○○ 문화탐방	7,025	
2019	6개 사업	15,075	
	경남도지사기 ○○○○○○○대회 참가비용	1,010	
	경남은행장기 ○○○○○○○대회 참가비용	892	
	경남도지사배 ○○○○○○○대회 참가비용	915	
	경남농협본부장기 ○○○○○○○대회 참가비용	906	
	제○○회 ○○○○ 기념식 참가비용	6,112	
	○○○○○ 문화탐방	5,24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보조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증빙서류가 누락되었으면 보조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령·교부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보조금 집행잔액 승인 없이 퇴직적립금으로 적립**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 ○○○○○에서는 2018년에서 2019까지 ○○○ 지회 운영비 사업(○○○○기금)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중 일부는 반납하였으나, 【표 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864천 원을 반납 하지 않고 ○○○○○ ○○○○○ 퇴직금 적립계좌로 이체하여 부적정하게 적립하였다.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정산 시 이에 대한 반납 조치 등 아무런 시정 조치 없이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해 주는 등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4】 ○○○○○ ○○○○○ 보조금 집행잔액 퇴직적립금 적립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부당적립액	적립일
계		291,124	290,309	814	814	2,864	
2018	○○○ 운영비 (○○○○기금)	143,624	142,809	814	814	1,391	18.12.24.
2019		147,500	147,500	0	0	676	19.12.27.
						797	19.12.27.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단체 운영과 관련 없는 사적모임에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 ○○○○○ ○○○○○에서는 ○○○지회 운영비(일반회계) 계획서 상 ‘연합회 분담금’으로 표기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8년 2,280천 원, 2019년 3,000천 원, 2020년 3,000천 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 ○○○○연합회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회 분담금은 지회운영과 관계가 없는 ○○○, ○○○○, ○○○, ○○○○ 등 각 지회 임원들의 친목도모<sup>1)</sup>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보조금으로 집행함이 부적정함에도,

사천시 ○○○○○과에서는 정산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정산 검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인정해 주었고, 그 결과 단체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모임 회비로 4,680천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 사적 모임에 보조금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분담금 항목	운영목적	집행액	비고
합계			4,680	
2018	소계		1,080	
	○○○협의회	친목도모	600	
	○○○○협의회	친목도모	240	
	○○○협의회	친목도모	240	
2019	소계		1,800	
	○○○협의회	친목도모	600	
	○○○○협의회	친목도모	480	
	○○○협의회	친목도모	480	
	○○○○협의회	친목도모	120	
	○○○○○○지회장협의회	친목도모	120	
2020	소계		1,800	
	○○○협의회	친목도모	600	
	○○○○협의회	친목도모	360	
	○○○협의회	친목도모	480	
	○○○○협의회	친목도모	240	
	○○○○○○지회장협의회	친목도모	12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각 협의회별 회칙 확인결과 목적은 회원간의 친목도모이며, 주요사업은 축·조의금 지급으로 확인됨

### 3) 명절휴가비 임의 집행

보조사업자 ○○○○○ ○○○○○에서는 ‘○○○ 운영비’(○○복지기금) 사업 계획서 상 명절휴가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 상근인력이 아닌 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 전담인력 3명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900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는 명절휴가비 예산을 2배로 인상하여 전 임원(36명 ~ 37명)에 대하여 현금성 경비인 상품권(농협상품권, 5만 원권)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설·추석 명절에 각각 40매씩 2년간 총 8,000천 원을 지급 하면서 ○○○ 임원이 아닌 ○○○ ○○인력, ○○○ 종사자 등 4명을 ○○○ 임원인 것처럼 작성하여 총 4회에 걸쳐 650천 원을 부적정하게 배부하였다.

**【표 6】 직원 명절휴가비 임의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자	비고
합계		3명	900		
직원 명절 휴가비	2018년 추석	○○○	100	18. 9. 21.	타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인력
		○○○	100		
		○○○	100		
	2019년 설	○○○	100	19. 1. 31.	
		○○○	100		
		○○○	100		
	2019년 추석	○○○	100	19. 9. 9.	
		○○○	100		
		○○○	10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7】 임원 명절휴가비 임의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임원수	1인당 지급액	지급인원	총지급액	부적정 지급인원	부적정 지급액
합계	-	-	-	8,000		650
2019년 설	36	50	40	2,000	4	200
2019년 추석	37	50	40	2,000	3	150
2020년 설	37	50	40	2,000	3	150
2020년 추석	37	50	40	2,000	3	15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19년에는 상품권 지급 시 지급관리대장 등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함에도 사천시 ○○○○○과에서는 정산검사 시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반납 등 시정 조치 없이 걱정하다고 인정해주는 등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사실이 있다.

#### 4) 출장여비 부당 수령

보조사업자 ○○○○○ ○○○○○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협회운영을 위한 출장비 157건, 11,482천 원을 집행하면서 2020. 11월 이전까지 총151건 11,135천 원에 대해서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아무런 지출증빙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차량운행대장 등 증빙서류를 통해 점검한 결과 【표 8】과 같이 시에서 지원하여 운행하고 있는 ○○○ 기관 차량을 운행하면서 출장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동승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63건, 1,249천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음에도, 사천시 ○○○○○과에서는 2018년, 2019년 출장내역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보완 조치없이 정산검사 결과 걱정하다고 인정해 주는 등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사실이 있다.

**【표 8】 관외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계		기관차량 운행 교통비 지출		동승자 교통비 지출		출장하지 않고 출장비 지출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계	63	1,249	26	498	33	512	4	239
2018년	15	210			15	210		
2019년	29	726	16	339	9	148	4	239
2020년	19	313	10	159	9	154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4. 인건비 지원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5,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그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 ○○○○○에서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인건비 및 기타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사천시 ○○○○○과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표 9】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 ○○○○○’에서 소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와 ○○○의 직책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세 총 6,606천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9】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미납부 내역**

(단위 : 명, 천 원)

연도별	미이행 인원	근로소득세 등 미납부액				비고
		계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7	6,606	5,332	654	620	
2018년	5	1,788	1,443	173	167	지회장 등 상근인력 5명
2019년	5	2,083	1,589	305	189	
2020년	5	2,029	1,687	143	199	
2021년	5	711	613	33	65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규정 미숙지로 보조금 집행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업무연찬 및 관련규정 숙지로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①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22조, 제26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등을 위반하여 ○○○○○ ○○○○○ 운영비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수행상황 점검,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정산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 ○○○○과 지방○○○○ ○○○(현 ○○○동)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대한  
○○○ ○○○○○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 ○○○지회 운영비 집행 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출장여비 총 4,113천 원은 “회수” 하시고, 「소득세법」 제13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6,606천 원 상당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천시 ○○과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따라 2017. 1. 1. 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 누락 등 1,084건 2,770백만 원을 수시 부과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135건 938백만 원을 감면 후에 추징하는 등 취득세 부과 및 감면후 추징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취득세 수시부과 및 감면 추징 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분	취득세 신고 누락 등 수시부과				감면 사후관리 추징			
	건수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건수	계	취 득 세	농특세 등
계	1,084	2,769,966	2,502,426	267,540	135	938,376	840,333	98,043
2017	380	803,649	723,606	80,043	23	104,383	93,285	11,098
2018	184	585,021	531,636	53,385	59	532,412	473,836	58,576
2019	201	421,021	383,502	37,519	13	127,125	113,688	13,437
2020	211	778,466	697,236	81,230	30	109,015	99,663	9,352
2021	108	181,809	166,446	15,363	10	65,441	59,861	5,580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상속 취득세 등 부과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부동산 취득에 적용할 표준세율로 농지는 1천분의 30을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간접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sup>1)</sup>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장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sup>2)</sup>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에서는 상속재산, 불법건축물, 농지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 또는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등

2) 과세표준 미신고, 과소신고 및 일부 누락 등을 말함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상속재산, 등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취득한 불법건축물, 1년 초과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세표준 누락 및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농지 세율 적용(1% 과소 적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2017. 10. 1.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총 120건 134,272천 원의 취득세 부과를 누락하였다.

【표 2】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과세구분	부과사유	건수	추 징(예정) 세 액		
				계	취득세	농특세 등
계			120	134,272	119,976	14,296
1	상속 취득세	상속 재산 취득세 미신고	70	47,481	42,742	4,739
2	불법건축물	등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취득	14	20,459	18,402	2,057
3	임시건축물	1년 초과 임시(가설)건축물	11	19,419	17,652	1,767
4	과세표준 누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표누락	14	39,549	35,043	4,506
5	세율적용 부적정	농지가 아님에도 농지세율(1%) 적용	11	7,364	6,137	1,227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취득세 감면 추징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이장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한다.

그리고 위 법 제17조에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감면받은 자동차

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하 이장에서 “대체취득”이라한다)에 취득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위 법 제36조의3에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따라서 사천시 ○○과는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및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 등 감면 받은 대상 물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직접 미사용하거나 감면 조건 미이행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고,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조건 위반 등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총 6건 10,278천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3】 취득세 감면 추징 누락 현황**

(단위: 천 원)

과세 대상별	추징사유	건수	추 징(예정) 세 액		
			계	취득세	농특세등
합 계		6	10,278	9,209	1,069
자경농민 농지 취득	경작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용도 사용(임대)	1	4,576	3,813	763

과세 대상별	추징사유	건수	추징(예정)세액		
			계	취득세	농특세 등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1	2,328	2,328	
생애 최초 주택 구입	3개월 이내 상시 미거주	4	3,374	3,068	306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에서는 업무 착오 등으로 취득세 미부과와 감면 추징 누락분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건수가 많지 않고 인허가 등 관련부서에서 수기로 자료를 받아야 하는 등 애로사항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연찬 실시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에 따라 취득세 부과 누락분 120건 134,272천 원과 감면 추징 누락분 6건 10,278천 원에 대한 취득세 총 126건 144,550천 원에 대하여 추징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소 관 기 관 사천시(○○○○과, ○○과, ○○○○과, ○○과)  
조 치 기 관 사천시  
내 용

사천시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2017. 10. 1.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부서명	공유재산 관리 대상	관리형태
○ ○ ○ ○ 과	○○○○○○ 등 2건	관리위탁
○ ○ 과	○○○○○ 등 2건	사용·수익 허가
○ ○ ○ ○ 과	○○○○○○○○○ 등 8건	사용·수익 허가
	○○○○○○○○○ 등 7건	관리위탁
○ ○ 과	○○○○ 내 9건	사용·수익 허가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미징수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

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시에서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면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을 위·수탁 협약서 및 사용·수익 허가서에 명시하여 사천시장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사용자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천시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위·수탁 협약서 및 사용·수익허가서에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납부함을 명시하고도 【표 2】와 같이 2017. 10. 1.부터 2021. 5. 24.까지 사용·수익 허가한 ○○○○○○ 등 행정재산 24건 대해 사천시가 납부한 보험료 20,013천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건물 공제 및 손해보험 미징수 현황**

(단위 : 천 원)

해당부서	사용자	물건명	연면적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	미징수 금액
계	24건				20,013
○○○○과			1,387	2017.11.5. ~2022.11.4.	14,644
○○○○과			486	2018.1.1. ~2022.12.31.	2,220
○○과			146	2020.12.16 ~2022.12.31	35
○○○○과			60.0	2016.01.13. ~ 2019.01.12	93
○○○○과			193	2017.02.01. ~ 2022.01.31	480
○○○○과			100.3	2021.03.25 ~2022.03.24	33

해당부서	사용자	물건명	연면적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	미징수 금액
○○○○과			82	2017.02.01. ~ 2022.01.31	204
○○○○과			97	2017.02.01. ~ 2022.01.31	242
○○○○과			78	2017.02.01. ~ 2022.01.31	194
○○○○과			38	2016.5.1. ~2021.12.31.	216
○○○○과			22	2017.1.1. ~2021.12.31.	56
○○○○과			33.1	2018.1.1. ~2020.12.31.	51
○○○○과			51.8	2020.1.1. ~2021.12.31.	61
○○○○과			28.3	2016.10.12. ~2021.12.31.	72
○○○○과			130	2017.1.1. ~2021.12.31.	323
○○○○과			41.7	2020.1.15. ~2021.12.31.	44
○○○○과			45.3	2017.1.1. ~2021.12.31.	113
○○○○과			51.8	2017.1.1. ~2021.12.31.	144
○○과			113.3	2020.07.01. ~ 2023.06.30	144
○○과			75.9	2016.11.1. ~ 2021.10.31	96
○○과			129.1	2016.11.1. ~ 2021.10.31	164
○○과			80.4	2020.06.22. ~ 2022.07.01	46
○○과			144	2016.11.1. ~ 2021.10.31	242
○○과			75.9	2016.11.1. ~ 2021.10.31	96

출처) 사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사천시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위·수탁 협약서 및 사용·수익 허가서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 미숙지로 사천시가 납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시 협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보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수탁 협약서 및 사용·수익 허가서에 명시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24건 20,013천 원에 대해서 징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구항 ○○○○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분할발주 업무 등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11. 23. ○○○○○(주) 대표 ○○○과 도급액 410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착공한 후 2021. 3. 16. 도급액 450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같은 해 2021. 12. 7. 준공예정으로 「○○○구항 ○○○○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공사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2020. 11. 23.	○○ ○○	스카이워크 L=217.2m, 주차타워연결 교량 2개소 등	2,649	450	2,199	2020. 11. 30. ~ 2021. 12. 7.	○○○○○○(주) 대표 ○○○	30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2. 동일 구조물공사 분할 발주·계약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sup>3)</sup> 및 단일공사<sup>4)</sup>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4.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과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위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제3절-2-라-2)에 따라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에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 10. ○○○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주)○○○○○○○○○○과 맺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르면 특허공법이 반영된 ○○○○○ 사용은 협약서

3)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며,

4)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따른 기술사용료나 제4조에 따른 하도급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 ○○○○○에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량의 교대·교각·슬래브 등과 동일 구조물인 거더를 관급자재로 분할계약하지 말고 하도급으로 직접참여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통합 발주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동일 구조물인 교량의 거더<sup>5)</sup> 부분을 기술사용료 및 하도급 하는 것으로 통합발주 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2020. 11. 23.과 2021. 3. 18.에 교대·교각 및 슬래브 등의 공사와 분할하여 거더 부분만 관급자재로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분리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특허부분을 공사와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현황

공 사 명	사 업 량	계약일자	설계금액 (천 원)	계약금액 (천 원)	비율 (%)	계약상대자	비 고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스카이워크 L=243.2m, 주차타워연결등 교량 2개소 등	2020. 11. 23.	463,640	410,317	88.499	○○○○○○(주) 대표 ○○○	공개경쟁입찰
	VR강관거더	2021. 3. 18.	1,876,000	1,690,000	90.085	(주)○○○○○○○ ○○○ 대표 ○○○	관급자재 수의계약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표 3]과 같이 ○○○○○○ 분할 발주로 인해 스카이워크 조성공사 낙찰율 88.499%에 비해 ○○○○○○는 낙찰율이 1.586% 정도 높게 계약됨으로써 29,753천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5) 거더(Girder): 교량의 상부구조물을 떠받치는 보(beam)를 뜻하는 말로서 I형이나 박스형 단면으로 힘이나 비틀림에 입체적으로 저항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표 3] 분할계약에 따른 예산 미절감 현황 (※ 본 공사 낙찰을 대비) (금액단위 : 천 원)

공 사 명	설계금액 (A)	계약금액	낙찰율 (B)	미절감액 (A*(B-88.499%))	비 고
○○○○○○	1,876,000	1,690,000	90.085%	29,753	※ 도급낙찰율 88.499%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3. 설계변경 및 예산 이용(移用)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차타워 연결교량 공사는 ○○○에서 추진 중인 ○○○○○○○○○○○○○○○○○ 주차타워와 연결되는 스카이워크(교량)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보고(○○○ 용궁시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기본설계 선정계획 보고, ○○○-2020.12.3.) 하였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移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移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차타워 연결 교량 추가 공사 예산은 [표 4]와 같이 ○○○에서 추진

하는 ○○○○○○○○○ 주차타워 설치공사로 편성되어 있었다.

[표 4] 예산편성 현황

사업명	예산과목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지역균형 발전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중심 시가지형, 국비지원)	시설비(401-01) : 2,483백만 원	
주차타워 연결교량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	○○○○○○○○○○ 주차타워 설치사업	시설비(401-01) : 350백만 원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 ○○○○○에서 주차타워 연결 교량 공사를 할 때에는 주차타워 연결교량 추가 설치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이므로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 발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移用) 할 수 없으므로 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용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2021. 3. 16.에 주차타워 연결 교량(L=14m, B=3.3m)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표 5]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약 200백만 원을 증액 시행하였다.

[표 5] 총괄 1회 설계변경 현황 (2021. 3. 16.)

(단위 : 천 원)

당 초			변 경 (2회)				추가 증액금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증 액		계	금 액
스카이워크, 주차타워 연결교량 등	계	2,726,997	스카이워크, 주차타워 연결교량 등 + 주차타워연결 교량 1개소 추가	계	2,832,609	계	105,612	계	200,000
	도급	410,317		도급	450,349	도급	40,032	도급	7,000
	관급	2,316,680		관급	2,382,260	관급	65,580	관급	193,000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설계변경 시행을 위하여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공사비 예산(350백만 원)을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 하여 시행하면서 2021. 3. 16.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의방의회의 의결

을 미리 득하지 않고 이용(移用)하여 사용하였으며, 2021. 5. 24. 현재까지도 예산에 대한 이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4.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 상태에서 설계도서 납품 및 공사 발주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7절-6. 용역의 일시 정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등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담당자는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같은 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에 따르면 발주청에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일시정지 시키고 일시정지 기간에는 모든 과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만약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 일시정지에 대한 해제 절차를 선행하여 과업을 재개한 후 설계도서 납품과 완료검사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여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는 2019. 4. 30. 착공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2020. 4. 28. 완료예정으로 있었던 (주)○○○○○ 외 1개사에서 2020. 12. 8. 공유수면 관리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중단, 코로나19 확산, 주민협의체 협의불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용역 일시정지를 요청하자 2020. 3. 23.부터 12. 8.까지 261일간 용역 일시정지를 결정하고 [표 6]과 같이 2020. 3. 23. 계약부서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였다.

[표 6] 용역 중지 통보내용

과업명	과업량	계약금액 (천 원)	과업기간	중지기간	중지사유
○○○구항(○○○○ ○○○○조성)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3,549	2019. 4. 24.~ 2020. 4. 28.	2020. 3. 23. ~ 2020. 12. 8. (261일)	사전설계심의 및 행정절차진행 시일 과다소요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 ○○○○○는 용역 일시정지 상태에서 용역 일시정지 기간인 2020. 3. 23. 이후에도 계약상대자인 (주)○○○○○ 외 1개사에게 용역감독 공무원의 감독 임무 편의를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기관 및 관련부처 협의, 주민협의체 협의 등을 완료하고, 설계도서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납품받은 설계도서에 대한 납품완료(검사 등)도 하지 않은 채 위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용역 일시정지 해제와

설계도서 납품에 대한 완료검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 상태에서 설계도서 납품 및 공사 발주한 사실이 있다.

## 6.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 등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본시설)에 따른 기본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같은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서 규정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 구축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 내용 등을 일반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 시행 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기반시설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관련자 주장

○○○ 관련자 실무담당자 ○○○○○ ○○○○○○○○ ○○○과 실무책임자 ○○○○○○ ○○○의 문답결과 고의성은 없고,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반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하여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② 관계기관 의견

○○○의 질문답변 내용과 같이 고의성은 없고 실무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할 발주에 따른 하자책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시 책임소재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예산은 신속하게 예산 이용(移用)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혼용과 부당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실무담당자로서 ○○○구항 ○○○○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분할발주 업무 등을 소홀하게 처리 한 실무담당자 ○○○○○ ○○○○○○○ ○○○과 실무책임자 ○○○○○ ○○○○○○○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은

① ○○○구항 ○○○○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추진을 하면서 동일 구조물공사 분할 발주·계약 부적정, 설계변경 및 예산 이용(移用) 부적정, 실시 설계용역 일시정지 상태에서 설계도서 납품 및 공사발주 부적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 미이행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과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② ○○○구항 ○○○○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추진을 처리한 실무 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예산의 이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직원에게 대해서는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 명품거리 조성사업 공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는 [표 1]과 같이 「○○○○○○○○○○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 10. 25. ○○○ 소재 (주)○○○○○○○ 대표 ○○○와 도급액 244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 2. 착공하고, 같은 해 12. 21. 1회 설계 변경하여 도급액 299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한 후 2018. 1. 30. 준공 처리하는 등 위 조성사업의 공사감독을 하였다.

[표 1] ○○○○○○○○○ 명품거리 조성사업 공사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 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 명품거리 조성사업	○○ ○○○○ ○○	복합판넬 설치 A=786㎡, 차양막설치	577	299	276	'17.11.2. ~ '18.1.30.	(주)○○○○○○○ 대표 ○○○	준공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1-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 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 계약 이행 사항 검사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이행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지시한 날로부터 완료된 시점까지 계약 미이행에 대한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 명품거리 조성사업」

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시장상인들의 벽면 철거 반대 민원으로 계약의 일부를 끝내지 못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공검사를 2018. 1. 30. 접수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당함이 발견되어 보완을 위하여 ○○○○○-7700호(2018. 2. 13.)로 계약상대자 (주)○○○○○○에 보완 요청을 통보 하였음에도 보완 조치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미이행 부분 지체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준공 전 민원발생으로 계약이행 내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나 기간연장을 하는 등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준공 이후 준공검사일 (2020. 2. 13.)에 알루미늄 복합판넬 당초물량(L=120m, A=1,258㎡)에서 변경물량 (L=83m, A=786㎡)으로 정산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공사금액 75,330천 원을 감액 하였으며, 크레인간판철거 및 재시공 미비 부분 확약서를 받아 준공이후에 하도록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위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 ○○○○○에서는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준수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① ○○○○○○○○○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를 미이행 하였음에도 준공접수 하고, 부당함이 발견되어 보완 통보를 하였음에도 보완 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준공 후 정산 설계변경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현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직원에게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는 [표 1]과 같이 「○○○ ○○○ ○○○○○○사업」을 위하여 2020. 2. 28. ○○○ 소재 ○○○○(주) 대표 ○○○과 도금액 4,22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3. 2. 착공하고 같은 해 12. 24. 1회 설계변경하여 도금액 4,376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한 후 2022. 3. 1.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1] ○○○ ○○○ ○○○○○○사업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 ○○○ ○○○○○○○사업 토목·건축·기계·조경공사	○○○ ○○길 55	전처리시설 40톤/일 혐기성소화조 2,010m <sup>3</sup>	6,964	4,376	2,588	20. 3. 2. ~ 22. 3. 1.	○○○○(주) 대표 ○○○	77%
○○○ ○○○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철거공사	○○○ ○○길 55	20톤/일	128	128	-	21. 2. 24. ~ 21. 3. 23.	○○○○산업(주) 대표 ○○○	100%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2. 실시설계용역 과업 중지 상태에서 설계도서 납품 및 공사 발주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지연배상금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6-가. 용역의 일시정지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같은 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에는 발주청 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내진설계 내용과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청에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

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용역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이행을 정지시켜 정지기간에는 모든 과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기간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면 용역 정지에 대한 해제 절차를 선행하여 과업을 재개 후 설계도서를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끝나면 완료검사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 ○○○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17. 8. 2. 착공하여 2018. 1. 28.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주)○○○○○○외 1개사에서는 ○○○ ○○○ ○○○○○사업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을 위한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유로 용역중지를 요청하자 [표 2]와 같이 같은 해 1. 19.부터 2020. 4. 8.까지(812일간) 용역을 중지하고 계약부서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용역중지 상태에서 용역감독 임무편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인 (주)○○○○○○외

1개사에 용역 중지기간인 2018. 1. 19. 이후에 환경부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과 행정절차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도서를 납품하도록 하여 납품받은 설계도서에 대한 납품완료(검사 등)도 하지 않은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용역중지 해제와 설계도서 납품에 대한 완료검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실시설계용역 과업 중지 상태에서 설계도서 납품 및 공사 발주한 사실이 있다.

[표 2] 용역 중지 통보내용

과업명	과업량	사업비(천 원)	과업기간	중지기간	중지사유
○○○ ○○○ ○○○○○○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397,242	'17.7.28. ~ '18.1.28.	'18.1.19. ~ '20.4.9.(812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을 위한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3.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장 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구상 단계에서 이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확정은 본 지침 제8조(사업관리방식 확정)에 따라 총 소요인력 검토 결과 사업관리 가용인력과 비교하여 소요인력이 가용인력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사업관리방식을 조정하여 발주청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사업관리방식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본 지침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관리 소요인력 중 20%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대가의 조정)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에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2021. 3. 8.)

(단위 : 백만 원)

당 초		변 경		부당증액금액	비 고
과 업 량	금 액	과 업 량	금 액		
건설사업관리 1식	609	건설사업관리 1식	667	58	상주기술인 등 배치 인·월수 증가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4.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을 할 때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 중 ○○○ ○○○○○에서 추진 중인 「○○○ ○○○ ○○○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표 5]와 같이 당초 설계상에는 소화조 구조물 하부를 평면터파기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터파기 작업을 깔대기 모양으로 시행하여 토사 교란없이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터파기토사 947m<sup>3</sup>, 연암 15m<sup>3</sup>의 발생량을 절감하여 공사비 약 2,157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소화조 구조물 하부 토사를 수직으로 터파기 후 잡석취환으로 설계되었으나 터파기작업을 깔대기모양으로 시행하고 토사교란 없이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잡석자재대 및 다짐 공사비 등 약 41,684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소화조 구조물 터파기 후 되메우기 수량을 제외한 사토를 L=1.0Km이내의

사토장에 반출토록 되어 있으나 하부형태대로 터파기함으로 인한 사토량 884m<sup>3</sup> (토사 : 869m<sup>3</sup>, 연암 15m<sup>3</sup>) 조정으로 공사비 약 1,876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 약 45,717천 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산정 한 사실이 있다.

[표 5]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47,369	1,652	△45,717	
터파기 수량 조정	터파기 수량 조정 (1,974m <sup>3</sup> →1,012m <sup>3</sup> )	3,809	1,652	△2,157	
잡석다짐 삭제	잡석다짐 및 반입 삭제 (1,125m <sup>3</sup> → 0m <sup>3</sup> )	41,684	0	△41,684	
사토처리 삭제	사토수량 조정 (884m <sup>3</sup> → 0m <sup>3</sup> )	1,876	0	△1,876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위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 ○○○○○에서는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소화조 구조물 터파기 수량 조정 등 과다하게 설계된 공사비 약 45,717천 원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① 「○○○ ○○○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과업 중지 상태에서 용역감독 공무원의 감독 임무 편의를 위하여 설계도서를 납품받고, 설계도서에 대한 납품완료(검사 등)도 하지 않은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현 ○○○○○),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  
○○ ○○○(현 ○○○○○),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 조정사유인 당초 계약금액  
보다 10% 증액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기술관리인 배치조정 및 관리인 수를 증가하여  
약 58백만 원을 부적정하게 용역계약 변경하였으며,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과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소화조 구조물터파기 수량 조정 등 과다하게 설계된 공사비 약 45,717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등에 따라 “감액”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는 [표 1]과 같이 2019. 6. 19. ○○○ 소재 ○○○○(주) 대표 ○○○의 2인 도급액 16,394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6. 25. 착공하고 같은 해 3. 29. 총괄 5회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18,577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22. 12. 30. 준공 예정으로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읍	산업단지 조성 146,628㎡	20,193	18,577	1,616	'19. 6. 25. ~'22. 12. 30.	○○○○(주) 대표 ○○○	50%
○○(○○○○○)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용역	○○○ ○○읍	산업단지계획( 변경) 1식	941,100	941,100	-	'20. 6. 22. ~'21. 12. 21.	(주)○○○○○○○ 대표 ○○○	50%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2.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제출 참가자격 과다제한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입찰공고)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공동계약)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2절 1-다-2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동계약에만 적용되어 제한하는 규정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공사계약 또는 물품, 용역계약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를 말하며,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용역계약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경우<sup>6)</sup>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도록 계열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을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표 2]와 같이 2020. 3. 17. ○○○ ○○ (○○○○○)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용역을 공고 하면서 개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일반용역사업인데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내용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의 자격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간 공동수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제한하여 공고하는 등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제출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 한 사실이 있다.

#### 6) 개별법령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용역사업(예)

-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 정밀안전진단용역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표 2] 계열사 간 공동수급 제한 공고현황

용역명	용역비 (백만원)	입찰공고일 (계약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참가자격 부당제한 공고내용	수급자	비고
○○○ ○○(○○○○○)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용역	941	'20. 3. 17. ( '20. 6. 1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 간 공동수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	(주)○○○○○ ○○ 대표 ○○○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3.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을 할 때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 중 ○○○ ○○○○○에서 추진 중인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표 3]과 같이 저류시설인 우수지에 설치계획인 울타리 L=305m는 저류시설 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디자인 웬스(W2,500×H1,200) 설치 시 출입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메쉬웬스(H2,000×W2,000)로 변경하면 시설물 설치 효용성을 높이는 등 공사비 약 31,412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조경공 식재공에서 조경공 식재공이 평떼(4,975㎡)와 초류종자살포(7,120㎡)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공법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부족하며 수량 구분 기준 또한 모호함에 따라 초류종자살포 공법으로 일괄 적용하고, 공법 변경과 함께 토공 비탈면 보호공 중복 설계 물량(7,015㎡)을 삭제하여 당초 평떼 4,975㎡와 초류종자살포 7,120㎡에서 초류종자살포공(5,080㎡)으로 변경하면 공사비 약 36,000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 일반산업단지내 오·폐수는 ○○제1일반산업단지내 기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차집하여 연계처리토록 계획되어있고, 단지내 입주 예정기업은 한국항공서비스 단일 업체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NO.0~NO.20 구간 설치 계획인 오수관로를 삭제하여도 단지 내 발생 오·폐수 처리에 문제가 없음에 따라 오수관로 설치 378.6m를 삭제하면 공사비 약 57,985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토 반출 승인 시 “운반거리 10km 정산, 사토장 간 반출 일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영개발사업장 우선 배출” 조건으로 사토 반출을 승인하였음에 따라 제출된 사토 반출처 중 운반거리 10km 이하인 “○○○○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 해안연결도로 정비사업”, “○○○○ 안길 확포장공사” 현장 반출 사토에 대하여 실운반거리로 정산하면 공사비 약 1,738천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등 총 약 127,135천 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이 있다.

[표 3]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255,203	128,048	△127,135	
안전웬스	제품변경 (디자인웬스 → 메쉬웬스)	54,558	23,146	△ 31,412	과다산정
조경 완충녹지	완충 A : 공법변경 완충 B : 중복구간삭제	53,200	17,200	△ 36,000	과다산정
오수관로	오수관로 연장 감소	117,670	59,685	△ 57,985	과다산정
사토운반	사토 운반거리 변경	29,775	28,017	△ 1,738	과다산정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위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 ○○○○○에서는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토운반 조정 등 과다하게 설계된 공사비 약 127,135천 원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①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제출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였으며, 이주단지 조성 지연으로 암발과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약 1,035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우수지 웅스 등 과다하게 설계된 공사비 약 127,135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등에 따라 “감액”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징계·시정 요구

제 목 ○○중점관리지역 ○○○○사업 공법선정 등 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는 [표 1]과 같이 2018. 12. 31. ○○○○○(주)(대표 ○○○)와 도금액 7,891백만 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9. 10. (주)○○○○○○ 외 1개사와 계약금액 929백만원에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을 체결하여 「○○중점관리 지역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침수대응사업 현황

사 업 명	계약일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계	도급	관급			
○○○ 중점관리지역 ○○○○○사업	'18.12.31.	○○○	○○○로 개량 L=5.17km	10,039	7,891	2,148	'19.1.3. ~ '21.8.20.	○○○○○○(주) 대표 ○○○	
○○○ 중점관리지역 ○○○○○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18.9.10.	○○○	건설사업관리 1식	929	929	-	'18.9.10. ~ '21.9.30.	(주)○○○○○○○ 대표 ○○○ 외 1개사	-

※ 출처 : ○○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등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판정한 후 승인서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적합한 분야의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검토서 등 관계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7조(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 검토)에 따르면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와 가설구조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 ○○○○○○○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흙막이 가설구조물의 높이가 최대 8.0m로서 기술사 등 적합한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판정한 후 승인하여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2019. 1. 3.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수 전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검토서 등 안전관리계획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승인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하고 있다.

### 3. 특허제품 설계 반영 절차 미 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허(신기술 등)를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3항과 같이 발주청에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

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검토)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는 설계도서를 검토할 때에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단면보수에 필요한 특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대용품의 비교와 유사 기술과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부서(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2018. 10. 2. 실시설계에 반영된 비굴착 단면보수에 대하여 ○○공법(특허제○○-○○○○○○○○호)을 적용하면서 공사시방서 및 적용단가 등의 주요공법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특히 특허 공법에 대하여 대체·대용품의 비교와 유사 기술과의 시공성, 경제성 등에 대해 계약담당부서(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선정하여 ○○공법 특허업체와 공사도급자가 공사비 약 0,000,000천 원을 하도급계약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2021. 5. 24.) 중 설계내역 및 특허 공사시방서를 검토한 결과 ○○○ ○○○○○○는 단면보수 특허공법의 기능에 대해 중복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특허제품(○○○-○○○○)에 구조물의 내중성화 및 염해의 예방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성화 및 염해방지를 위한 ○○처리 ○○○ ○○공법(○○)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표 1]과 같이 공사비 약 104,500천 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표면처리 보강공법 적용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당초	조정	증 감
		104,500	-	△104,500
○○○○ ○○○ : ○○공법(○○)	○○○ 및 ○○○○ 피복보호	104,500	-	△104,500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4. 하수관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준공(기성)검사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 감독 및 업무범위) 제20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지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발주청의 지도감독과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동 지침 제103조(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명된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검사를 임할 때는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수관거공사 표준지방서」 2-10 관거시공 및 준공검사에 따르면 관거시공에 따른 경사검사와 수밀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

검사인 육안 및 CCTV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되메우기 후 포장 전에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상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 ○○○○○○○○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준공(기성)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준공(기성)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준공(기성)검사자가 설계도서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관거시공 등에 대해서는 CCTV 영상자료 등으로 품질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준공(기성)검사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와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은 2019. 12. 19. 등 4건의 준공(기성)검사에 대하여 CCTV 품질검사가 필요한 전체 구간(2,438.6m) 중 일부(1,307m)만 CCTV 촬영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잔여구간 1,132m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지 않아 하수관거 시공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준공(기성)검사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적합하게 준공(기성)되었다고 인정하여 [표 2]와 같이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해 지도·감독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표 2] 하수관로 준공(기성)에 따른 품질확인시험 실시현황**

사업명	검사내역	검사일	검사자	입회자	비고
○○○ 하수도정비	'19년 1차분: 1회, 2회, 3회, 준공	2019. 12. 11 2020. 3. 24 2020. 6. 16 2020. 11. 27	기술지원기술인 ○○○, ○○○ ○○○	○○○(공사관리관) ○○○(공사관리관) ○○○(책임사업관리기술인) ○○○(책임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 출처 : ○○○ 제공자료 재구성

또한 검사원으로 임명된 준공(기성)검사자도 [표 3]과 같이 2019. 12. 19. 등 4건의 차수분 준공(기성)검사 신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대상 2,438.6m 중 1,132m에 대해서는 CCTV 촬영성과품이나 관로조사보고서가 없음

에도 검사에 필요한 CCTV 영상자료 등 품질검사 성과품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기성)검사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다는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준공(기성)금액이 지출되도록 검사업무에 소홀하였으며, 아울러 준공(기성)검사에 입회한 ○○○에서도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에 명시된 CCTV 영상자료 등 근거자료의 검증 없이 검사자가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3] 하수관로 준공(기성)에 따른 품질확인시험 실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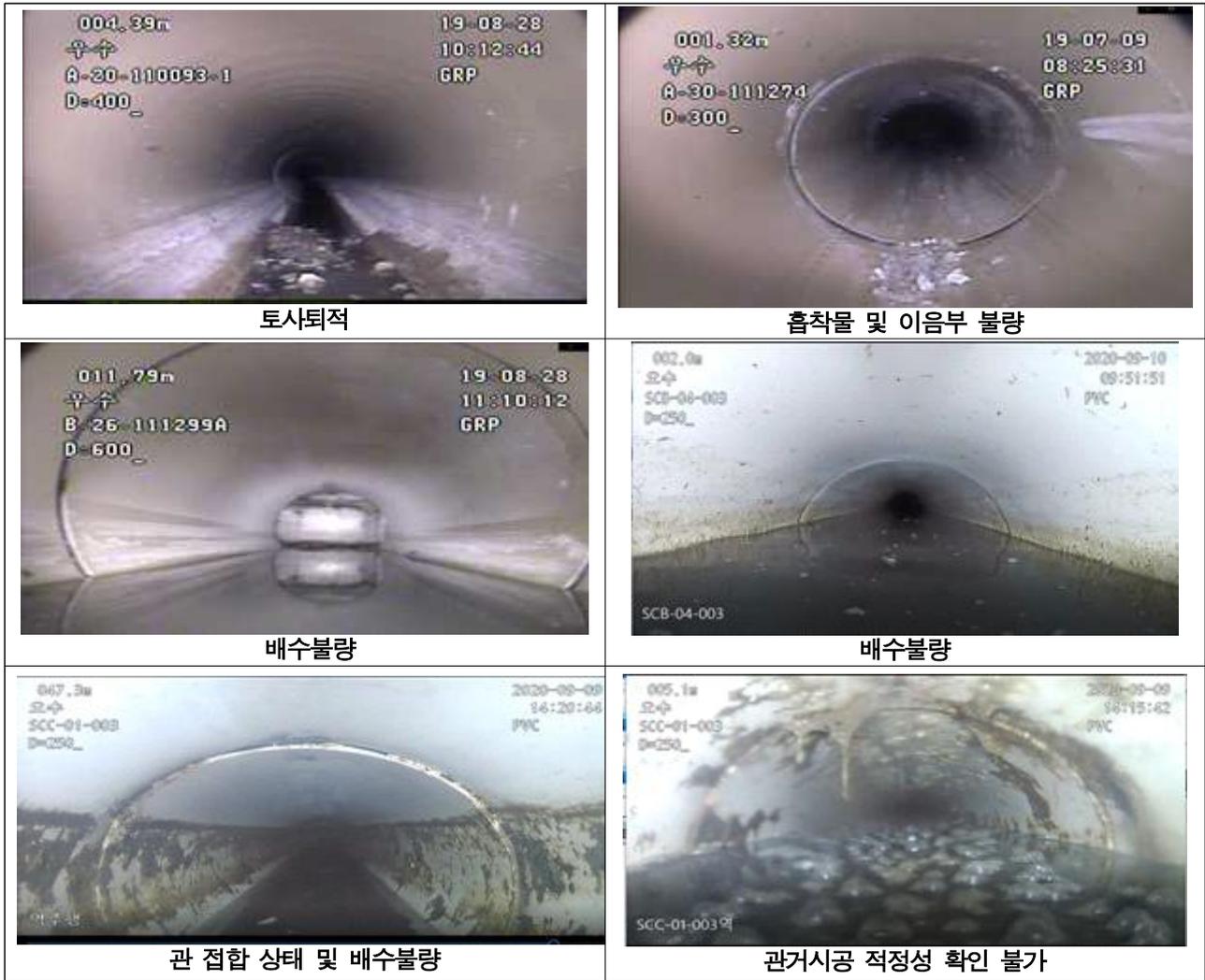
사 업 명	사업량	공사기간	준공(기성) 현황			CCTV 조사현황		비 고	
			회수	검사일	시공물량	시험일자	시험물량		
○○○ 하수도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총체분	하수관로 L=3,382.8m	2019. 1. 3. ~ 2021. 8.20.			2,438.6 m		1,307.0 m	품질검사 없이 1,131.7m 준공
	'19년 1차분	하수관로 L=2,278.5m	2019. 1. 3. ~ 2020.11.30.	1회	2019.12.11.	665.7 m	2019. 7. 9. 2019. 8.28.	605.3 m	품질검사 없이 60.4m 준공
				2회	2020. 3.24.	200.0 m	미실시		품질검사 없이 200m 준공
				3회	2020. 6.16.	1,074.7 m	2020. 9. 9. 2020. 9.10.	335.2 m	품질검사 없이 739.5m 준공
				준공	2020.11.27.	338.2 m	2019. 7. 9. 2019. 8.28. 2020. 9. 9. 2020. 9.10.	206.4 m	품질검사 없이 131.8m 준공
	'19년 2차분	하수관로 L=160.1m	2019.12.10. ~ 2021.12. 8.	1회	2020. 6.16.	160.1 m	2020. 9. 9.	160.1 m	-
				준공	2020.11.27.	-	-	-	-
'20년 분	하수관로 L=880.5m	2020. 2. 6. ~ 2021. 8.20.	1회	2021. 3.17.	-	-	-	BOX 설치구간	
'21년 분	하수관로 L=63.7m	2021. 1.28. ~ 2021. 8.20.	시공 중						

※ 출처 : ○○○ 제공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감사기간(2021. 5. 10. ~24.) 중 하수관거 시공에 대해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 공사관리관<sup>7)</sup>과 책임건설관리기술인은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관거공사에 대해 CCTV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일부 촬영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촬영이 불가능 여건(관경의 50%정도가 침수 또는 부유물로 인해 피복과 접합부의 확인 불가 등)에서 CCTV 촬영을 실시하여 내부검사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그림]과 같이 흙착물이나 토사 퇴적, 배수불량 등 관거 공사의 일부에서 부실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성과품에 대한 영상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 등 시정지시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발주청 소속직원

[그림] 하수관 내부 CCTV 조사결과 주요결함 현황



※ 출처 : ○○○ 제공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법령과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특정공법의 설계반영에 대한 미흡한 처리와 준공 및 기성검사에 대해 CCTV 품질검사를 통해 부적정한 구간은 보수 등 시정하고 관련지침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① ○○○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 미흡 및 주요 공종의 공법 적용에 대한 확인 소홀과 기성검사시 관거시공에 대한 CCTV 품질검사 등 영상의 확인없이 검사완료를 처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② 준공 및 기성검사 시 일부 관거 시공에 대해 CCTV 검사를 일부구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검사자가 CCTV 촬영자료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 지방○○○○○○ ○○○(현 ○○○)과 실무담당자가 미숙하게 처리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비, 특정공법에 대한 검토와 기성검사 실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③ 준공(기성)검사 구간에 대한 CCTV 조사결과 관 접합부 및 배수불량 등 부실시공 한 건설업자 및 현장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관거 시공이 일부 부실하도록 현장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CCTV 품질검사 미이행 및 부실시공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기성)검사원을 접수하여 검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관거의 CCTV 품질검사 촬영 성과품의 확인 없이 준공(기성)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기술지원기술인(검사자)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④ 흙막이 지보공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받아 미흡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CCTV 검사결과 배수불량 및 접합부 지점의 잡물 누적 등 관로시공의 견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구간과 CCTV 품질검사(CCTV 촬영)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구간은 CCTV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요구

제 목 ○○ ○○○정비사업 하도급관리계획 등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는 [표 1]과 같이 2019. 5. 3. ○○○○○(주)(대표 ○○○)과 도  
금액 3,485백만 원에 계약하여 같은 해 5. 8. 착공하고 2021. 1. 21. 총괄 2회 설계  
변경으로 도금액 5,368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같은해 5. 7. 준공 예정으로  
「○○○○○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내구소하천 정비사업 현황

사 업 명	계약일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용역) 기간	용역 및 시공회사	비 고
				계	도급	관급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7.12.3	○○ ○○	실시설계용역 1식	84	84		'17. 12.11. ~ '18.12.26	(주)○○○○ 대표 ○○○	
○○○ 정비사업	'19.5.3	○○ ○○	○○○정비 L=1.87km	6,107	5,368	739	'19. 5.8. ~ '22.5.7.	○○○○○○(주) 대표 ○○○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미 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는 도시계획시설인 위 내구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고시포함) 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표 2]와 같이 2019. 5. 8. 상기 사업에 착공 한 후 감사 수행 종료일인 2020. 5. 24.까지 위 ○○○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미 이행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착공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공정률)
○○○○ 정비공사	○○ ○○	○○정비 L=1.87km	'19. 5.8. ~ '22.5.7.	'19.5.8.	미 결정	미 인가	75%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 3. 소하천정비종합(중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우선순위 선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소하천 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보전·복원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소하천 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라 [표 3]과 같이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3]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임무

주요 심의내용	비고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 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 ○○○는 위 소하천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천 정비 우선순위 및 홍수위, 하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소하천정비종합(중기)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위 사업의 추진에 있어 [표 4]와 같이 소하천정비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을 통해 시행해야 함에도 소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임의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우선순위

하천명	'16년도 우선순위	'17년도 우선순위	비고
○○○	1	2	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우선순위 임의변경)
○○○	2	3	
○○○	3	5	
○○○	4	7	
○○○	5	8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 4.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준수여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5]에 따르면 수급인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는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 신청을 받을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지급자재대 포함)과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비교하고 걱정할 경우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하도급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인 ○○○○○○(주)(대표 ○○○)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신청한 문서[○○-○○호(‘20.6.2.)]를 처리함에 있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자 ○○○○(주)(대표 ○○)이 2020. 6 .1. 제출한 하도급 포기서의 “당사의 사정으로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수급 예정자의 선정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해 포기서의 사유가 [표 5]와 같이 상호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확인하지 않았고,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승인여부도 통보하지도 않아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을 묵시적으로 인정받아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공정거래위원회)**

내용	비고
<p>제5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b>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b>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b>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b>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b>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b>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b>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b>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b>재해 기타 사유</b>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된 경우</li> </ol>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p>

그리고 계약상대자인 ○○○○○○(주)(대표 ○○○)이 2020. 6. 2.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를 살펴보면, [표 6]와 같이 하수급자 ○○○○(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억 〇,〇〇〇만 원이나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과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총액은 19억 7,970만 원으로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억 〇,〇〇〇만 원이 더 높고, 2021. 2. 25.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하수급자 ○○○○(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억 〇,〇〇〇만 원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과,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총액은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〇,〇〇〇만 원이 더 높은 16억 7,028만 원으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 요청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〇〇〇 〇〇〇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신청이 적정성 평가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변경 승인[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호 (2021.2.25.)]한 사실이 있다.

[표 6] 하도급관리계획과 상이한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천원)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실제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심사일 (연월)	하도급 할 공사	하수급 예정자 (시공능력평가액)	계약일 (통보일)	하도급 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지급자재)	실 하도급자 (시공능력평가액)	
〇〇〇〇 정비공사 (〇〇〇〇〇〇(주))	3,485,167	'19.4.16	〇〇공사	〇〇〇〇(주)	'20. 6. 2.	철근 콘크리트	1,316,737 (662,967)	〇〇〇〇(주)	·당초 계획한 〇〇 공사하수급 예정자 의 하도급 포기서 미검토  ·하도급계약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음
			-	-	'21.2.25.	철근 콘크리트	1,007,317 (662,967)	〇〇〇〇(주)	

※ 자료 : 〇〇〇 제출자료 재구성

## 5. 소하천 비탈면 공법 변경 검토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도급 계약한 목적물의 시공 등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

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검토)에는 발주청 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설계는 시추조사 등을 통해 상재하중에 대한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밝혀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 ○○○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각종 공법 및 시공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안전 등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묻고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질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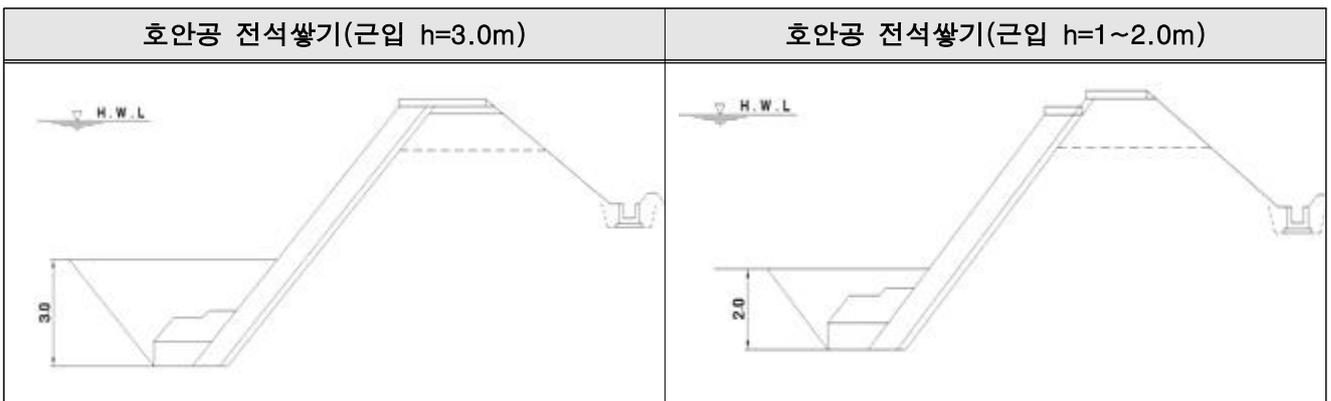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공사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원지반의 상태에 대해 시추조사 등을 통해 상재하중에 대한 지

반의 허용지지력과 적합한 공법선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9. 10. 18. ○○○○○(주)(대표 ○○○)의 실정보고에 대해 하자 방지 및 경제적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2019. 12. 13. 학술용역(지반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호안의 비탈구조물인 전석쌓기 구간에 대해서는 지반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교량 기초의 최대 근입 깊이를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호안의 전석 기초에도 근입 깊이를 일괄 2~3m로 적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변경은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합한 공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당초 설계자의 의견 청취 없이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며, 감사 종료일인 '21. 5. 24. 하천 지반의 굴착시 하부 지지력 상태를 고려하여 호안 전석의 근입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하류부(NO.0+12~NO.45+18, L=924m)는 근입깊이를 2m로 조정하고, 상류부(NO.45+18~NO.92+6, L=920m)는 앞사석 부설없이 근입깊이 1m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어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표 7]과 같이 공사비 약 374,37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림 1] 호안 전석쌓기 기초 근입깊이 등 조정 현황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7]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374,370	
호안구조물 (전석쌓기)	전석기초 근입깊이 조정 (h=3m→1~2m)	2,980,950	2,606,580	△374,370	공정률 약80%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관계부서(○○○,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법령과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걱정성과 포기서 사유의 검토가 미흡하였고 지반조사없이 호안공법 전석기초 근입깊이를 반영한 사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등 관련지침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①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호안 비탈면 공법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감독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사업 착공 후 현재까지 미 이행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포함) 등 누락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이행하시고, 예산 낭비우려가 있으며 미 시공한 공사비 약 66,237천 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계변경(감액)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또한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에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하도급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사업)부서 직원들에게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시정요구

제 목 ○○ ○○○정비사업 시행계획수립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시  
조 치 기 관 ○○시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는 [표 1]과 같이 2016. 3. 31. ○○○○(주)(대표 ○○○)과 도금액 1,534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 6. 착공하고 2020. 3. 6. 총괄 8회 설계 변경하여 도금액 1,648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20. 5. 29. 「○○○○ 정비사업」을 준공하였다.

[표 1]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

사 업 명	계약일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용역) 기간	용역 및 시공회사	비 고
				계	도급	관급			
○○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4.11.2	○○ ○○	실시설계용역 1식	48	48		'14.11.6. ~ '14.11.10.	(주)○○○○○	
○○ ○○ 정비사업	'16.3.31	○○ ○○	○○정비 L=1.1km	2,087	1,648	439	'16. 4. 6 ~ '20.5.29.	○○○○(주) 대표 ○○○	

※ 자료 : ○○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소하천정비종합(중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행정절차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소하천 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보전·복원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소하천 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라 [표 2]과 같이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2]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임무**

주요 심의내용	비고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 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 ○○○는 위 소하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하천정비 우선순위 및 홍수위, 하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소하천정비종합(중기)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을 통해 시행해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임의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우선순위

하천명	'14년도 우선순위	'15년도 우선순위	비고
○○○	1	39	위원회 미 심의 (우선순위 임의변경)
○○○	2	1	

※ 자료 : ○○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소하천정비종합(중기)계획과 다른 ○○○ 개수계획 반영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소하천 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보전·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소하천 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홍수위, 하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하며, [그림 1]과 같이 종합계획과 달리 소하천 구역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경우 등 소하천 정비가 필요시에는 홍수위, 하폭, 호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미리 종합(중기)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고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했다.

[그림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개수사업 시행 현황

	
소하천종합정비계획 (○○○ 계획없음)	시행계획(○○연못)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상기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 시 [표 4]와 같이 시행계획(하폭, 호안 구조물 등)을 상위 계획과 달리 수립하였으며, 특히 시행계획에 포함한 생태연못은 소하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설계에 반영하여 생태연못 공사비 약 61,216천원 상당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않도록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대비 시행계획 미 부합

○○○	위치	하폭(m)		구조물명	
		종합(중기)계획	시행계획	종합(중기)계획	시행계획
	0+218.0	12	12.00	제2교량	
	0+224.0	12	12.00		교량4
	0+250.0	15	12.00		
	0+271.0	10	10.00	제3교량	교량5
	0+307.0	10	9.00	제2암거	
	0+359.0	10	10.50	제2암거	복개구간1
	0+400.0	11	8.60	신설제1교량	
	0+450.0	8	8.60	제3암거	
	0+453.5	8	8.60	제3암거	
	0+484.0	8	9.00		복개구간2
	0+500.0	8	9.00	제4교량	교량6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 4. 홍수위 이상 소하천 비탈사면 공법검토 공사관리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도급 계약한 목적물의 시공 등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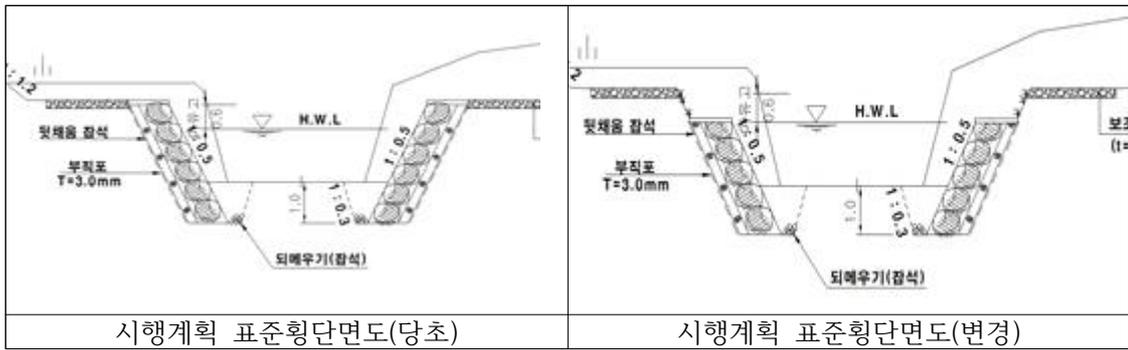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검토)에는 발주청 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 ○○○는 소하천의 호안 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시공은 홍수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묻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리·감독했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제방의 호안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그림 2]와 같이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홍수위 이상 비탈 사면은 소류력에 따른 사면의 침식, 토립자 유출 등의 우려가 없어 전석 대신 줄때 등으로 사면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독마루까지 전석을 일괄 설치하도록 반영하여 공사비 약 57,167천원을 절감할 수 없고, 교량 및 압거 등 주요구조물의 철근가공 및 조립 단가는 현장가공보다 공장가공으로 적용할 경우 공사비 약 66,805천원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표 5]와 같이 위 공사비 총 123,971천 원에 대해 공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계획홍수위를 고려한 호안 구조의 조정**



**[표 5]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123,971	
교량공 및 호안구조물	철근가공 및 조립 (현장가공 → 공장가공)	1,648,156	1,581,350	△66,804	
	계획 홍수위 상부 여유고 제외	333,256	276,088	△57,167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5. 도시계획시설 인가 공사완료의 공고 등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소하천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2020. 5. 29. 완료 한 후 7일 이내인 2020. 6. 5.까지 시·도지사에게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등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중기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우선순위의 변경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추가되는 시설은 종합정비계획의 변경 등 절차를 인지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쉼터 제공 등 복리를 위해 기여한 점과 주민들의 요구인 편입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 선정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호소하며 관련지침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①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등 절차이행에 소홀하였으나 주민의 복리 및 편익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편입용지를 최소화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 등에 따라 추진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실무책임자 ○○○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따라 소하천 준공검사를 거쳐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의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통보 요구

제 목 건축허가 등 법령검토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는 2017. 10. 1.부터 2021. 5. 24.까지 ○○○ 관내에서 [표 1]과 같이 총 980건의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설계도서 등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는지 검토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검사조서와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검사조서를 확인한 뒤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하였다.

[표 1] ○○○ 건축허가 현황 (2017. 10. 1.~ 2021. 5. 24.)

합 계	주거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교육복지 의료시설	문화집회 시설	판매 영업시설	공장창고 산업시설	기타
980건 (100%)	294 (30%)	315 (32%)	26 (3%)	13 (1%)	28 (3%)	154 (15%)	150 (15%)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 ○○○는 건축허가 신청된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는 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을 설계·감리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2021. 5. 3. ~ 5. 24.) 중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를 통해 ○○○ ○○○에서 건축허가 한 건축물 중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와 관련된 법령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표 2]와 같이 총8건이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데도 건축허가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2] 건축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건축허가 현황

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연면적 (m <sup>2</sup> )	규모	허가일	사용 승인일	건축사	위반사항
①	(주)○○○○ ○○○		근린생활 시설	4,251	지하○/지상○	'**.**.**.	'**.**.**.	설계(감리) (주)○○○○ 사용승인○○○○	직통계단 실내마감재료, 간편물초과 안전관리계획 미승인
②	(주)○○○ ○○		문화 및 집회시설 (수족관)	6,902	지하○/지상○	'**.**.**.	'**.**.**.	설계) (주)○○○○ 감리(주)○○○○○ 사용승인) ○○○○	단열재미설치, 관계전문가 미협력 방화구획적용 부적정
③	○○○		노유자 시설	2,643	지하○/지상○	'**.**.**.	미준공	설계)○○○○○ 건축사	배연창 설치방법 부적정
④	○○○○○		의료시설	4,668	지상○	'**.**.**.	미준공	설계)○○건축사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위반, 마감재료 표기누락
⑤	○○○ ○○		노유자 시설	1,695	지하○/지상○	'**.**.**.	미준공	설계)○○건축사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위반, 방화구획 적용소홀
⑥	○○○		노유자 시설	1,668	지하○/지상○	'**.**.**.	미준공	설계)○○○○○ 건축사	방화구획 적용소홀
⑦	○○○○ ○○		의료시설	6,011	지하○/지상○	'**.**.**.	미준공	설계)○○○○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지하층의 구조, 주차구획 설치기준 위반
⑧	(주)○○ ○○○		공장	5,053	지상○	'**.**.**.	미준공	설계(주)○○건축사	풍하중 구조계산 오류, 방화구획완화 부적정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① ○○○ ○○○ ○○○ ○○○번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 위반사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 제3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sup>8)</sup>으로 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 제5호에 따라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에 한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 ○○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S1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설계자이면서 감리자인 (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은 [표 3]과 같이 지상 1층과 지상2층 사이의 계단을 직통계단에 설치해서는 안되는 돌음계단으로 설계하고,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628.68㎡로써 500㎡를 초과하는 경우 복도 등에 면하는 벽체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난연성능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하나 난연성능을 알 수 없는 샌드위치 패널로 계획하였고, 지상1층에 설치된 트라이에어리어<sup>9)</sup> 2개소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높이가 1.2m, 1.5m가 되는데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정 건폐율 60%를 초과한 61.2%로 설계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한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은 건축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이 되었는 데도 이를 적합한 것으로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작성 후 ○○○ ○○○에 제출하였고, ○○○ ○○○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17. 12. 27. 건축허가하고 2019. 7. 24. 사용승인하였다.

그리고 ○○○ ○○○는 건설사업자가 10m 이상 굴착공사와 2m가 넘는 흙막이

8) 계단의 단너비 양단이 일정하지 않은 계단. 계단의 단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닌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의 형태로써 발을 디디는 면적 차이로 인해 피난 시 헛디딤 등 낙상사고 우려가 있음

9) 지하주차장의 환기 및 습도조절, 비상발전기의 급기 및 배연을 위해 설치한 환기수직통로

지보공 시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2018. 10. 19. 착공신고 시 제출하였다면 20일 이내에 검토 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어야 했으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3] 건축법령 위반사실(직통계단 돌음계단 설치, 건폐율 초과 부분)**

피난계단의 계단참을 돌음계단으로 설계	건폐율 초과부분(지하층 D.A상단 1m이상 노출)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② ○○○ ○○○ ○○○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건축물 위반사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따라 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바닥, 벽, 지붕 등에 단열재 설치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 따라 따르면 방화셔터는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따라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토목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중간 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설계자인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은 2019. 10. 17.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각 층의 거실 및 복도를 냉·난방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면 사무실 및 휴게음식점의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부위와 지하2층 바닥에도 단열재가 설치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했는데도 [표 4]와 같이 지하2층 바닥 2,437㎡ 중 약 1,400㎡의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 하부와, 사무실 및 휴게음식점 벽체 일부에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2021. 5. 10. 사용승인 신청 시 설계자가 단열재를 누락하지 않은 것으로 단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해당 부분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단열재 THK 90mm 비드법 단열재(“가”등급)는 현장 납품사실이 없어 감리자인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은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도록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설계자인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은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sup>10)</sup> 방화셔터를 [표 4]와 같이 출입구 폭이 2.5~4.9m에 불과한 곳에도 일체형방화셔터를 사용하였고, 감리자인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가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때 토목 분야 기술사 등의 서명날인을 누락하였는데도 이를 ○○○ ○○○에 제출하였고, ○○○ ○○○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19. 10. 17.에 건축허가하고 2021. 5. 10. 사용승인 한 사실이 있다.

**[표 4] 건축법령 위반사실(바닥단열재 누락, 방화셔터 설치)**

로비 하부 바닥 단열재 누락 (2019.10.17.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면)	방화셔터 사용현황(지하1층)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③ ○○○ ○○○-○번지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 위반사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6항에 따라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제2항에 따라 배연창은 거실에 직접 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 ○○○는 [표 5]와 같이 건축설계도서에 지상층 직통계단의 갑종방화문이 피난방향 반대방향으로 계획되어 있고, 배연창이 직접 거실에 면하지 않고 화재 시 폐쇄되어야 하는 대피공간에 면해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21. 2. 5.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2020. 1. 30.)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담퍼의 기준」 개정사유

**[표 5] 건축법령 위반사실(배연창 설치 부적정)**

배연창 설치장소와 방화구획되어 있는 대피공간의 중복 설치공간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④ ○○○ ○○○ ○○○-○번지 의료시설 용도 건축물 위반사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의료시설 또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는 [표 6]과 같이 건축설계도서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 창호(X1,Y2)로부터 건축물의 가장 먼 반대쪽(X7, Y1) 까지 거리가 56m로써 소방관 진입창 추가로 1개소 더 설치되어야 했고, [표 6]과 같이 건축물의 입면도에 외벽 마감재료(THK30 화강석 버너구이+THK40mm 열방사단열재)와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비드법 보온재 2종1호)의 구체적인 난연성능 표기가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다.

**[표 6] 건축법령 위반사실(단열재 난연성능 표기 누락)**

단열재 난연성능 표기 누락	필로티 상단 단열재 난연성능 표기 누락
----------------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⑤ ○○○ ○○○ ○○○번지 노유자시설 건축물 위반사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 따라 방화셔

터는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유효폭은 90cm 이상, 복층유리를 할 경우 유리창의 두께는 24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는 [표 7]과 같이 건축설계도서에 직통계단의 방화구획을 넓은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로 계획하였고, 소방관 진입표시창(PW-6)의 유리창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해야 하나 80cm로 계획하고 유리창의 두께를 24mm 이하로 하지 않고 두께 26mm로 설계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20. 5. 19. 건축허가 하였다.

**[표 7] 건축법령 위반사실(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소방관 진입 표시창 설치)**

각 층간 방화구획으로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부적정	소방관진입 표시창 설치규격(두께, 표시) 미달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⑥ ○○○ ○○○ ○○○-○○번지 노유자시설 건축물 위반사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 따라 방화셔터는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방화셔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 ○○○는 [표 8]과 같이 건축설계도서에 직통계단의 방화구획을 일체형 방화셔터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21. 1. 6. 건축허가 하였다.

**[표 8] 건축법령 위반사실(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각 층간 방화구획에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부적정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⑦ ○○○ ○○-○번지 의료시설 용도 건축물 위반사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제1항에 따라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전원) 제3항에 따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해야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고 차로의 너비는 직각주차인 경우 6.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는 [표 9]와 같이 지하1층 거실 바닥 면적이 360㎡로 300㎡를 초과하였는데도 급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건축물의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 창호(X5, Y2)로부터 가장 먼 반대쪽(X10, Y6) 까지 거리가 113m로 기존 소방관 진입창으로부터 40m 마다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여야 하나 1개소만 설치되었고, 비상전원실을 의료용 가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과 방화구획하지 않았고, 지상1층에 설치된 직각주차구획 중 경형 주차구획 2대와 장애인용 주차구획 2대에 면한 차로는 6m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차로의 폭을 5.55m만 확보하게 하였으며, X1, Y1지점에 면한 주차구획 2면은 직각주차 형태로서 대지 내에 통행이 가능한 차로에 접하지 않고 인접한 대지를 경유하여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2020. 9. 23. 건축허가 하였다.

**[표 9] 건축법령 위반사실(지하층 식수대 설치누락, 방화구획 미설치)**

지하1층 식수대 미설치	비상용발전기실 방화구획 미설치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⑧ ○○○ ○○○ ○○○ ○○○-○번지 공장용도 건축물 위반사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설계하중)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의 기본풍속은 30m/s을 적용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내화구조의 벽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 ○○○는 [표 10]와 같이 건축구조계산을 할 때 ○○지역의 기준풍속 30m/s가 아닌 26m/s를 적용하여 주요 구조부와 외장재의 내력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로 설계하였고,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완화할 때 이동식 크레인 (고정식 대형기기)이 설치·이동되는 방향으로만 방화구획 완화를 하지 않고 내화구조의 벽체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까지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2021. 2. 16.에 건축허가 하였다.

**[표 10] 건축법령 위반사실(구조계산 풍하중 산정오류, 방화구획 완화 부적정)**

○○○ ○○○ ○○○-○번지 공장 건축구조계산서 중 3.2 풍하중 부분 발체	방화구획 완화 관련 설계도서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답변 내용은 건축허가 처리 시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여야 하나 짧은 민원처리기간 내에 검토해야 하고 업무 미숙에 따라 법령 검토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공무원에 대해 업무연찬 등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 ①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한 실무담당자 ○○○ ○○○○○○ ○○ ○, 실무책임자 ○○○ ○○○○○○ ○○○, 감독책임자 ○○○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건축법령 등에 맞지 않게 설계하고 감리업무 등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 ○○○ ○○○ ○○○번지 업무시설 설계자, 감리자인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사용승인검사자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과, ○○○ ○○○ ○○○번지 일원 문화 및 집회시설(○○○)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감리자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를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착공하지 않았거나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 ○○○ ○○○-○번지 노유자시설, ○○○ ○○○ ○○○ ○○○-○번지 의료시설, ○○○ ○○○ ○○○ ○○○번지 노인복지시설, ○○○ ○○○ ○○○ ○○○-○○번지 노인복지시설, ○○○ ○○○ ○○-○번지 일원 의료시설, ○○○ ○○○ ○○○ ○○○-○번지 공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의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 및 ○○○○○는 ○○○로부터 [사진1]과 같은 『○○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허가 신청된 총 7건의 공장 및 창고 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신청된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건축과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 [사진 1] ○○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출처) ○○○제출자료 재구성

### 2. 전면공지 조성기준 검토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0조(용어의 정의)제1항에 따르면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

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이며, 같은 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을 위해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고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장 산업시설용지 제7조(전면공지) 및 제2장 지원시설용지 제10조(전면공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연결녹지의 보행자통로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 ○○○○○ 및 ○○○○○는 ○○○로부터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항에 따라 건축협의를 받았다면 신청된 건축계획이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 중 전면공지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후 회신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2021. 5. 3. ~ 5. 24.) 중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를 통해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 중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맞게 건축허가 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표 1] 및 [사진 2]와 같이 전면도로와 대지 경계선인 건축선으로부터 2m를 후퇴하여 형성된 전면공지는 전면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보행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전면공지에 옹벽을 설치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울타리 및 조경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등 별도 의견 없이 협의회신 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6건의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였는데도 건축허가 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있다.

[표 1] ○○ ○○일반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주용도	연면적 (㎡)	층수	허가일자	협의부서	협의자
(주)○○○○		공장	5,053.75	○	‘**.*.**.	○○○○○	○○○
(주)○○○○○		공장	3,171.03	○	‘**.*.**.	○○○○○	○○○
(주)○○		공장	10,935.71	○	‘**.*.**.	○○○○○	○○○
○○○○		창고	4,931.63	○	‘**.*.**.	○○○○○	○○○
(주)○○		공장	9,858.96	○	‘**.*.**.	○○○○○	○○○
○○○○○○○○○○○○ (주)		공장	5,308.5	○	‘**.*.**.	○○○○○	○○○
○○○(주)○○○○		공장	1,229.5	○	‘**.*.**.	○○○○○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 2] 전면공지 조성 위반현황

○○○○물류센터 (○○○ ○○○-○번지)	(주)○○○○○ 공장(○○○ ○○○-○번지)
전면공지로 지정된 건축선(도로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한 부분에 문주 및 조경을 설치	전면공지로 지정된 건축선(도로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한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3. 생태면적을 적용 검토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2조(친환경계획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는 ‘생태적 건강성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량화로서 지표(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도시를 관리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유도하고자 환경친화적 관련 지침을 규정하여 권장하며,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표1-1-3,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하면 생태면적률은 용지별로 최소 30%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text{산식 : 생태면적률} = (\sum(\text{공간유형별면적} \times \text{가중치}) \div \text{대지면적}) \times 100$$

그리고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 원칙) 제3항에서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 ○○○○○ 및 ○○○○○는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신축하려는 건축물이 제1장 산업시설용지 제11조(생태면적률 등) 및 제2장 지원시설용지 제15조(생태면적률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생태면적률을 준수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협의를 회신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 건축협의를 해 준 건축물은 [표 2]와 같이 생태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연지반 또는 투수형 포장없이 대지 전체를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설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인데도 이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건축협의 회신 한 사실이 있다.

**[표 2] ○○ ○○일반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생태면적을 및 전면공지 현황**

대지 위치	건축주	배치도	위반내용
○○○ ○○○ -○	(주)○○ ○○○		○전면공지 조성기준 위반 : 전면공지 2m를 연접한 보도 높이와 같이 조성하고 보도로 포장하여야 하나 철근콘크리트 옹벽과 문주를 설치 ○생태면적률 미확보 : 대지전면 콘크리트 포장
○○○ ○○○ -○	(주)○○ ○○○		○전면공지 조성기준 적합 ○생태면적률 확보(57.79%)
○○○ ○○○ -○	(주)○○		○전면공지 조성기준 위반 : 전면공지 2m를 연접한 보도 높이와 같이 조성하고 보도로 포장하여야 하나 전면공지에 철근콘크리트 옹벽과 담장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포장 ○생태면적률 미확보 : 대지전면 콘크리트 포장

대지 위치	건축주	배치도	위반내용
○○○ ○○○ -○	○○○○		○전면공지 조성기준 위반 : 전면공지 2m를 연접한 보도 높이와 같이 조성하고 보도 로 포장하여야 하나 보도 대 신 조경을 설치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문주를 설치 ○생태면적을 미확보 : 대지 중 생태면적 11.3%만 확보 (기준 30% 이상)
○○○ ○○○ -○	(주)○○		○전면공지 조성기준 위반 : 전면공지 2m를 연접한 보도 높이와 같이 조성하고 보도 로 포장하여야 하나 철근콘 크리트 옹벽을 설치 ○생태면적을 미확보 : 대지전 면 전체 콘크리트 포장
○○○ ○○○ -○	○○○○○○○ ○○○○(주)		○전면공지 조성기준 위반 : 전면공지 2m를 연접한 보도 높이와 같이 조성하고 보도 로 포장하여야 하나 철근콘 크리트 옹벽과 문주를 설치 ○생태면적을 미확보 : 대지 전면 전체 콘크리트 포장
○○○ ○○○ -○	○○○(주) 사천공장		○전면공지 조성기준 위반 : 전면공지 2m를 연접한 보도 높이와 같이 조성하고 보도 로 포장하여야 하나 보도로 포장하지도 않고 투시형 울 타리와 문주를 설치 ○생태면적을 미확보 : 대지면 적 전체 콘크리트 포장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답변 내용은 「○○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건축협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자들에게 관련법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①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맞지 않는데도 건축물 허용용도(업종) 및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만 확인하고 건축협의 회신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검토를 소홀히 한 실무 담당자 ○○○○○ ○○○○○○ ○○○(현 ○○○○○), ○○○○○ ○○○○○ ○○○(현 ○○○), ○○○○○ ○○○○○○○ ○○○(현 ○○○○○), ○○○○○○○○○○○ ○○○(현 ○○○○○),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직원에게 대해서는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 ○○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표 1]과 같이 (주)○○○○○건축사사무소 대표 ○○○와  
 도금액 362백만 원으로 2016. 11. 20. 계약하고 같은 해 11. 21.에 착공하여 2017. 11. 28. 준  
 공하였다.

[표 1] ○○○ ○○체육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

용역명	위치	사업내용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회사	비 고 (현공정)
○○○ ○○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 ○○○ -○○	실내체육관 및 목욕탕 A:3,058.02㎡	362	2016. 11. 21.~ 2017. 11. 28	(주)○○○○○ 건축사사무소 ○○○	100%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2]와 같이 건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주) 대표 ○○○  
 과 2018. 2. 5. 계약하고 같은 해 2. 12. 에 착공하여 2019. 5. 30. 준공하였다.

[표 2] ○○○ ○○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타			
○○○ ○○○체육센터 건립공사	○○○ ○○○ ○○○ ○○○ -○○	실내체육관 및 목욕탕 A:3,058.02㎡	5,273	3,209	1,978	86	2018. 2. 12. ~ 2019. 5. 30	○○○○○○○ ○○(주) 대표 ○○○	100%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 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등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2m이상 흙막이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 ○○○○○○는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검토·승인하고 2m이상 흙막이가설구조물 설치를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2018. 2. 12. 건설사업자인 ○○○○○○○○(주)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검토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높이가 10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와 높이가 3m인 흙막이 토류판에 대한 구조검토가 누락되었는데도 공사를 추진하게 한 사실이 있다.

## 3. 건설공사 품질계획서 미승인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 ○○○○○○는 2018. 2. 12. 건설사업자인 ○○○○○○○○(주)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면 품질시험 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

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건설사업자가 2018. 2. 12.에 제출한 품질시험 계획서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항에 따라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이 적절한지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배치된 품질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게 한 사실이 있다.

### 4. 건설기술용역 평가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설계 용역으로 210백만 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기본설계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 ○○○○○○는 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용역비 362,178천원)인 『○○○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2018. 2. 12.에 착공하였다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인 같은 해 8. 11.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 ○○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용역평가를 착공일인 2018. 2. 12.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8. 11. 까지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2021. 5. 10.)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 5. 빗물 재이용시설 활용 설비설치계획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제1항 별표1에 따라 실내체육관으로써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 ○○○○○○는 『○○○ ○○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실내체육관 용도의 건축물으로써(건축면적 1,720.08㎡)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등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대상인 『○○○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2019. 5. 30.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다.

## 6. 건축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2항에 따라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목욕장과 물놀이시설 또는 수영장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목욕탕이 101㎡, 수치료실이 426㎡ (수치료실+샤워장)로 계획되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한 527㎡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건축공사이므로 건축공사 감리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 감리보고서에 동시에 서명날인 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감리보고서 서명날인 대상인 『○○○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공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가 2018. 2. 12.부터 2019. 5. 23까지 감리활동을 하면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의 관계전문기술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는데에도 이를 지도감독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건축협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자들에게 관련법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통보하지 않고 품질관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평가를 누락하였으며, 빗물재이용설비 설치대상인데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누락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 ○○○(현 ○○○), 실무담당자 ○○○ ○○○○○○ ○○○(현 ○○○)과 실무책임자 ○○○ ○○○○○○ ○○○(현 ○○○○○○), ○○○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